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제정 2016. 5. 18. 개정 2017. 4. 3.
개정 2017. 9. 27. 개정 2018. 4. 11.
개정 2019. 6. 14. 개정 2019. 7. 30.
개정 2020. 2. 24. 개정 2020. 6. 30.
개정 2020. 9. 18. 개정 2021. 3. 26.
개정 2021. 6. 25. 개정 2022. 2. 9.
개정 2022. 7. 7. 개정 2022. 9. 22.
개정 2023. 4. 5. 개정 2023. 7. 11.
개정 2024. 11. 13. 개정 2025. 3. 19.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라 한국도로공사(이하 “우리공사”라 한다)에서 집행하는 시설공사 입찰 중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 낙찰자 결정 시 적용할 심사세부기준(이하 “심사세부기준”이라 한다)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자조달시스템”이란 시행령 제14조 및 39조에 따라 우리공사가 지정·운영하는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을 말한다.
2. “법정경비”라 함은 관련 법령에 의해 공사원가에 계상이 의무화되어 있는 경비로서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부가가치세 등을 말한다.
3. “경비 등 합계”란 세부공종 입찰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경비로서 법정경비를 제외한 기타경비, 공사이행보증서 발급수수료, 제비율 제외 항목 및 공사손해보험료 등을 말한다.
4. “직접공사비”란 세부공종별 단가(재료비, 직접노무비, 산출경비)에 수량을 곱하여 산정 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5. “단가 등 지정항목[PS(Provisional Sum) 항목]”이라 함은 사전에 물량이나

금액을 확정할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인해 현장설명 시 배부하는 물량내역서 상에 금액 등을 지정한 항목을 말한다.

6. “설계서”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를 말한다.
7. “물량내역서”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8호가목에 따라 우리공사 또는 입찰자가 작성하여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과 동 품목 또는 비목의 규격, 수량, 단위 등이 표시된 내역서를 말한다.
8. “산출내역서”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9호에 따라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규격, 단위, 단가 등을 기재한 내역서를 말한다.
9. “세부공종”이란 물량내역서, 산출내역서 및 하도급내역서에 물량 및 단위가 표시된 최소단위 공종을 말한다.
10. “균형가격”이란 입찰금액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으로, 제6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11. “균형단가”는 기준단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제7조에 따라 세부공종 별로 산정한 단가를 말한다.
12. “기준단가”란 입찰단가를 심사하기 위한 기준으로, 제8조에 따라 세부공종 별로 산정한 단가를 말한다.
13. “물량내역작성 허용 세부공종”이란 우리공사가 제17조에 따라 물량내역서의 작성을 허용한 세부공종을 말한다.
14. “추정물량”이란 우리공사가 입찰공고 시 제공한 물량내역서의 물량으로 입찰자의 산출내역서 작성을 돕기 위해 제시한 물량을 말한다.
15. “입찰물량”이란 입찰자가 우리공사에서 제시한 설계서, 물량내역서의 추정물량 등을 참고하여 작성한 산출내역서 상의 물량을 말한다.
16. “최종물량”이란 산출내역서의 입찰물량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우리공사에서 확인한 물량을 말한다.
17. “참여비율”이란 공동수급협정서 상의 각 구성원의 공사참여지분율을 말한다.
18. “시공비율”이란 공동수급협정서 상 각 구성원의 공사참여지분율에 시공능력 평가액을 한도로 하여 산정한 비율을 말한다.
19. “고난이도공사”란 아래 표와 같다. 다만, 고난이도공사 중 우리공사가 공사의 특성 등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반공사 또는 간이형 공사로 발주할 수 있다.

구 분	고난이도공사
교 량	· 연장 500m 이상으로 경간장 100m 이상 교량 · 경간장 100m 이상인 특수교량(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트러스교 등)
터 널	· 연장 3,000m 이상 또는 방재1등급터널, 하저 또는 해저터널
기 타	· 고속도로 확장공사 또는 국내 시공실적이 많지 않거나 도심지 통과 노선 등 특별한 시공관리가 필요하여 공사주관부서에서 요청한 공사

20. “일반공사”란 시행령 제42조제4항의 공사 중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이면서 고난이도 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를 말한다.
21. “간이형 공사”란 시행령 제42조제4항의 공사 중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인면서 고난이도 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를 말한다.
22. “심사위원회”란 제20조에 따른 시공계획심사를 위하여 제22조에 따라 우리 공사가 구성한 위원회를 말한다.
23. “공사주관부서”란 해당공사의 발주를 의뢰한 우리공사의 부서를 말한다.
24. “공사시행부서”란 해당공사에 관한 사업관리 등의 업무를 주관하는 우리공사의 부서를 말한다.
25. “계약담당부서”란 해당공사의 발주, 입찰, 계약체결 등 종합심사낙찰제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우리공사의 부서를 말한다.
26.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란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의 입찰참가를 허용하는 공사를 말한다.
27.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8조의2에 따라 주력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발주한 전문공사의 경우 제13조의 “전문업종”은 “주력업무분야”로 본다.

제3조(입찰공고) 우리공사는 입찰공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종합심사낙찰제 적용 대상이라는 점
2.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열람에 관한 사항, 심사에 필요한 서류와 제출기한 등
3.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실시 여부
4. 현장설명 실시 여부
5. 하도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하도급계획서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부여됨과 동시에 불이행 시 차기 입찰에서 받을 불이익
6. 배치기술자 시공경력 평가 시 제출한 계획서(배치예정기술자 목록 등)에 따라 이행할 의무가 부여됨과 동시에 불이행 시 차기 입찰에서 받을 불이익

7. 시공계획 심사 시 제출한 계획서에 따라 이행할 의무가 부여됨과 동시에 불이행 시 차기 입찰에서 받을 불이익
8. 우선순위 시공계획 및 물량심사대상자의 수 및 심사절차(단, 고난이도 공사에 한한다)
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서의 내용 및 청렴계약 위반 시 받을 계약의 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10. 기타 법령, 행정규칙 등에서 입찰공고에 명시하도록 정한 사항

제4조(현장설명 시 교부서류) 우리공사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당 공사 현장설명에 참가하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설명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현장설명을 하는 경우라도 필요할 때에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게시로 비치 또는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1. 산출내역서 작성방법 및 하도급계획서 작성방법
2. 물량내역작성 허용공종, 물량심사 대상공종, 물량산출근거 및 시공계획서 작성 및 제출방법(고난이도공사로 한정한다)
3. 물량산출기준, 물량산출요령, 물량내역 산출사유서 작성방법(고난이도공사로 한정한다)
4.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단, 순수내역입찰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물량내역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입찰금액 산정에 참고가 되는 자료
5.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한 세부공종 및 단가
6.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7. 그 밖의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등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입찰서 등의 제출) ① 입찰자는 입찰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찰서
2. 제4조제1호의 산출내역서 작성방법에 따른 산출내역서
3. [별표5-1], [별표5-2] 제출서류 목록표에 따른 제출서류
 - 3-1. 배치기술자 심사관련 서류의 제출일은 최초의 종합 심사서류 제출요구일로부터 15일 이후로서 우리공사가 일정순위자 이내를 지정하여 별도로 지정한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하도급계획서는 종합심사점수가 최고점인자에 한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3-2.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결과 적격자(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자)가 50개사 이상인 경우, 입찰금액 평가 및 가격산출의 적정성 평가 결과에 따라 일정순위자 이내를 지정하여 순차적으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단, 간이형 공사의 경우 입찰금액 평가 및 가격산출의 적정성 평가 결과(하도급계획 심사 제외)에 따라 일정순위자 이내를 지정하여 순차적으로 서류를 제출하게 한다.
4. 그 밖에 심사를 위해 입찰공고문 등에서 우리공사가 요구한 자료

- ② 물량심사 및 시공계획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입찰자는 제4조제2호의 교부한 물량산출근거 작성방법에 따른 물량산출근거 및 시공계획서 작성방법에 따른 시공계획서를 입찰공고문 등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물량심사 대상자로 선정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우리공사는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 이후 심사서류의 반환이나 변경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 ④ 우리공사는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 3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하도급계획서의 서류 미비 및 오류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보완하게 할 수 있다.
- ⑤ 우리공사는 제4항에 따른 기한까지 보완을 요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균형가격 산정) ① 우리공사는 균형가격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입찰자가 제출한 입찰금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자를 심사 및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시행령 제39조제4항에 따른 무효입찰인 경우
2. 입찰서상의 금액과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인 경우
3. 입찰금액이 예정가격보다 높거나 예정가격 대비 100분의 70 미만 입찰인 경우
4. 이윤 또는 공종(세부공종 및 세부공종 내 각 비목 포함)에 음(-)의 입찰금액이 있는 경우. 다만, 우리공사에서 작성한 금액이 음(-)의 금액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5. 산출내역서상의 각 항목별 PS금액(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이 설계내역서의 금액과 다른 경우
6.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경비 등 합계(기타경비, 공사이행보증수수료, 공사손해보험료 등을 각각 평가)의 각 항목별 금액이 우리공사가 현장설명 등에서 제시한 산출방법에 따라 산출한 금액보다 1000분의 997미만인 경우
7. 산출내역서상의 각 항목별 입찰금액이 우리공사가 지정하여 투찰하도록 하거나 관련법령에서 정해진 금액 또는 비율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법정경비)보다 1000분의 997미만인 경우(다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는 우리공사가 반영하도록 한 금액과 다른 경우)
8. 설계내역서의 세부공종에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로서 산출내역서의 세부공종 비목별 단가(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각 비목)가 설계내역서의 세부공종 비목별 단가보다 1000분의 997미만인 경우가 하나의 항목이라도 있는 경우

9. 산출내역서의 세부공종별 직접노무비가 우리공사가 작성한 세부공종별 직접노무비보다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10. 입찰자의 산출내역서상 세부공종 비목별 단가(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각 비목)가 설계내역서상 세부공종 비목별 단가보다 100분의 150초과 또는 100분의 50미만인 경우가 하나의 항목이라도 있는 경우

② 균형가격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입찰금액을 제외한 입찰금액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하며, 산정 결과는 원단위 미만 절사한다.

1. 입찰금액이 20개 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상위 100분의 20이상과 하위 100분의 20이하에 해당하는 입찰금액을 제외한 입찰금액을 산술평균하여 균형가격을 산정한다. 입찰금액 순위 상위 또는 하위 기준에 해당하는 입찰금액이 각각 2개 이상인 경우 이를 모두 제외한다. 다만, 동일한 입찰금액으로 인해 제외되고 남은 입찰금액이 10개 미만일 경우 동일한 입찰금액 순위 상위 또는 하위 기준에 해당하는 입찰금액 각각 1개씩만 제외한다.
2. 입찰금액이 10개 이상 20개 미만인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상위 100분의 40이상과 하위 100분의 10이하에 해당하는 입찰금액을 제외한 입찰금액을 산술평균하여 균형가격을 산정한다. 입찰금액 순위 상위 또는 하위 기준에 해당하는 입찰금액이 각각 2개 이상인 경우 이를 모두 제외한다. 다만, 동일한 입찰금액으로 인해 제외되고 남은 입찰금액이 10개 미만일 경우 동일한 입찰금액 순위 상위 또는 하위 기준에 해당하는 입찰금액 각각 1개씩만 제외한다.
3. 입찰금액이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상위 100분의 50이상에 해당하는 입찰금액과 최하위 1개의 입찰금액을 제외한 입찰금액을 산술평균하여 균형가격을 산정한다. 동일한 입찰금액 순위 상위 기준에 해당하는 입찰금액이 2개 이상인 경우 1개만 제외한다.

제7조(균형단가 산정) ① 설계내역서상 세부공종 단가 대비 100분의 65 미만 또는 100분의 110 초과인 입찰단가는 균형단가 산정 시 제외한다. 다만, 상기 입찰단가를 제외한 결과 균형단가 산정대상이 되는 입찰단가가 모두 제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균형단가는 제1항 및 제6조제1항에 해당하는 입찰단가를 제외한 입찰단가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하며, 산정 결과는 원단위 미만 절사한다.

1. 입찰단가가 20개 이상인 경우에는 입찰단가의 상위 100분의 20이상과 하위 100분의 20이하에 해당하는 입찰단가를 제외한 입찰단가를 산술평균하여 균형단가를 산정한다. 입찰단가 순위 상위 또는 하위 기준에 해당하는 입찰단가가 각각 2개 이상인 경우 이를 모두 제외한다. 다만, 동일한 입찰금액으로 인

- 해 제외되고 남은 입찰단가가 10개 미만일 경우 동일한 입찰단가 순위 상위 또는 하위 기준에 해당하는 입찰단가 각각 1개씩만 제외한다.
2. 입찰단가가 10개 이상 20개 미만인 경우에는 입찰단가의 상위 100분의 40이상과 하위 100분의 10이하에 해당하는 입찰단가를 제외한 입찰단가를 산술평균하여 균형단가를 산정한다. 입찰단가 순위 상위 또는 하위 기준에 해당하는 입찰단가가 각각 2개 이상인 경우 이를 모두 제외한다. 다만, 동일한 입찰금액으로 인해 제외되고 남은 입찰단가가 10개 미만일 경우 동일한 입찰단가 순위 상위 또는 하위 기준에 해당하는 입찰단가 각각 1개씩만 제외한다.
 3. 입찰단가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입찰단가의 상위 100분의 50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단가와 최하위 1개의 입찰단가를 제외한 입찰단가를 산술평균하여 균형단가를 산정한다. 동일한 입찰단가 순위 상위 기준에 해당하는 입찰단가가 2개 이상인 경우 1개만 제외한다. 다만, 입찰단가가 2개 이하인 경우에는 제외없이 산술평균하여 균형단가를 산정한다.

제8조(기준단가 산정) 기준단가는 설계내역서상 세부공종단가에 예정가격을 설계 금액으로 나눈 비율(소수점 아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70(간이형 공사는 90)과 균형단가의 100분의 30(간이형 공사는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산정 시 원단위 미만은 합산 후 절사한다.

제 2 장 종합심사 방법

제9조(심사기준일) 각 심사항목별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문 등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 제10조(심사항목 및 배점)**
- ① 일반공사의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1-1]과 같다.
 - ② 고난이도공사의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1-2]와 같다.
 - ③ 간이형 공사의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1-3]와 같다.
 - ④ 우리공사는 공사의 내용,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점수를 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입찰공고시 명시하여 가감 조정할 수 있다.
 - ⑤ 심사분야별 및 심사항목별 점수는 각각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심사분야별 점수를 합산한 종합평점은 100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1조(심사기준) ① 종합심사낙찰제 적용대상 공사의 심사기준은 [별표2-1]에서 [별표4]와 같다.

② 우리공사는 입찰공고문 등에서 해당 심사항목에 대하여 평가할 수 없거나 평가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한 항목에 대하여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③ 우리공사는 심사점수 등의 계산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이 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소수점 아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12조(심사방법) ① 제21조의 낙찰자 선정을 위한 심사분야는 공사수행능력, 입찰금액, 사회적 책임, 계약신뢰도 분야로 구분하여 계약담당부서에서 심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사수행능력분야 평가는 [별표2-1], [별표2-2]에 의한다.

③ 사회적 책임분야 평가는 [별표3-1], [별표3-2]에 의한다. 다만, 평가 항목 중 감점에 대한 취소, 효력정지, 해제 및 소송 진행(공정거래 관련법 준수 심사요소의 조치정도 중 고발[‘법인고발, ‘법인 및 개인고발’ 포함]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등을 종합심사신청 마감일까지 관련기관으로부터 우리공사가 통보받은 경우 또는 해당 업체가 관련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우리공사에 제출함으로써 해당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감점하지 아니한다. 또한 사회적 책임의 각 심사항목별 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음(-)인 경우는 0점으로 한다.

④ 입찰금액분야 심사는 [별표4]에 의한 금액 심사점수와 가격산출의 적정성 심사점수의 합계로 평가한다.

⑤ 계약신뢰도분야 심사는 입찰자가 심사를 위해 제출한 배치기술자 배치계획과 하도급관리계획, 시공계획을 실제 계약이행 과정에서 불이행한 경우에 [별표2-1], [별표2-2], [별표4]에 의해 평가한다.

⑥ 공사주관부서장은 배치기술자 배치계획과 하도급관리계획, 시공계획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불이행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해당업체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종합하여 계약담당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공동수급체 심사방법) ① 우리공사는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공동수급에 따른 이행내용 및 이행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공동수급체현황표[별지 8호 서식]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참여비율에 추정금액을 곱한 금액이 시공능력공시액을 초과하면 그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시공능력공시액을 한도로 인정하여 심사하고 잔여 참여비율은 다른 구성원에 배분하여 심사하지 않는다.

- ③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주된 공사 이외의 공사를 분담한 구성원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 ④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로서 상대 업역에 참여한 자의 시공비율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공사참여지분율에 상호시장 진출에 따라 평가된 상대 업종 시공능력평가액을 한도로 하여 산정한다.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한 경우 시공비율은 전문업종별로 각각 적용한다.
- ⑤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8조의2에 따라 주력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발주한 전문공사의 경우, 공동계약의 시공비율은 주력업무분야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제14조(종합심사 점수 산정) ① 일반공사는 공사수행능력점수, 사회적 책임점수(공사수행능력점수의 배점한도 내에서 가산한다), 입찰금액점수(단가심사점수 및 하도급계획 심사점수 포함) 및 계약신뢰도 심사점수를 합산하여 종합심사 점수를 산정한다.

② 고난이도공사는 공사수행능력점수, 사회적 책임점수(공사수행능력점수의 배점한도 내에서 가산한다), 입찰금액점수(단가 심사점수, 하도급계획 심사점수, 물량 심사점수 및 시공계획 심사점수 포함) 및 계약신뢰도 심사점수를 합산하여 종합심사 점수를 산정한다.

③ 간이형 공사는 공사수행능력점수(경영상태점수 포함), 사회적 책임점수(공사수행능력점수의 배점한도 내에서 가산한다), 입찰금액점수(단가 심사점수 및 하도급 계획 심사점수 포함) 및 계약신뢰도 점수를 합산하여 종합심사 점수를 산정한다. 간이형 공사의 종합심사 점수 산정은 입찰금액점수(단가 심사점수 포함)가 높은 순으로 낙찰 가능성이 있는 입찰자에 한하여 순차로 공사수행능력점수, 사회적 책임점수, 계약신뢰도 점수를 심사할 수 있으며, 선순위자가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된 경우 차순위자에게 심사일정, 배치기술자 서류제출 지정일 등을 별도로 통보할 수 있다.

제15조(물량·시공계획 심사대상자 선정) 우리공사는 고난이도공사에 대하여 제14조제2항에 따라 종합심사 점수(물량심사점수와 시공계획 심사점수 제외)를 산정한 후 해당 점수가 최고점인 자부터 순차적으로 물량심사 또는 시공계획심사 대상자를 선정한다.

제16조(물량심사) ① 우리공사는 제15조에 따라 물량·시공계획의 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한하여 순차적으로 물량을 심사한다.

② 우리공사는 입찰자가 작성한 세부공종별로 물량을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할 세부공종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할 수 있다. 다만, 심사할 세부공종을 정할 경우 제1호는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1. 해당 공사의 규모 및 중요도 등에 따라 물량심사 대상으로 현장설명 시에 명시한 세부공종
2. 제1호 이외의 세부공종에 대하여는 심사대상자가 작성한 입찰물량과 우리공사가 교부한 추정물량이 서로 다른 세부공종
3. 기타 입찰공고문 등에 명시한 기준에 해당하는 세부공종

③ 물량심사 절차는 우리공사 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7조(물량내역서 작성 허용범위 등) ① 우리공사는 현장설명 시 교부한 물량내역서 작성 허용공종에 대해 설계서에 근거하여 입찰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에 따라 물량내역(품명, 규격, 단위, 수량)을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1.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따라 물량내역서의 물량내역을 작성한다.
2.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간 상이한 경우 입찰자는 우리공사에서 확인한 설계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을 작성한다.
3. 설계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상이한 경우 입찰자는 우리공사에 서면으로 확인한 후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② 입찰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우리공사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다만,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공지사항에 게재한 경우에는 모든 입찰자에게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1. 물량내역서의 세부공종을 추가·삭제하거나 물량을 “0”으로 할 경우
2. 세부공종의 물량내역(공종명·규격·단위)을 수정할 경우

③ 입찰자는 물량산출기준, 물량산출요령 및 물량산출유의서에 따라 물량내역을 산출하여야 한다.

④ 입찰자는 제2항에 따라 우리공사에 사전질의 또는 사전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입찰서 제출마감일로부터 15일 전까지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하며, 우리공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로부터 5일 전까지 승인 여부를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공고문 등에 사전질의 제출마감일 또는 질의회신 기한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8조(물량내역서 작성기준 등) 입찰자는 물량내역서를 작성할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물량내역의 작성은 우리공사에서 교부한 물량내역서의 내용 및 체계를 원칙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2. 세부공종을 새로 추가한 경우에는 별도공종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제19조(물량산출 부적합 처리) 물량심사 시 심사대상자의 산출내역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세부공종의 입찰금액이 부적합한 것으로 보아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제17조제2항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거나, 우리공사가 승인·회신한 내용과 다르게 수정한 경우
2. 별도공종의 세부공종이 음(-)의 입찰금액으로 이루어진 경우(우리공사 지정금액이 음(-)인 경우 제외)
3. 제18조제2호에 의한 별도공종이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세부공종인 경우로서 제6조제1항제8호의 표준시장단가 입찰기준을 위반한 경우 또는 별도공종의 세부공종 입찰단가(합계)가 설계단가(합계) 대비 100분의 70 미만이거나 100분의 110 초과인 세부공종이 있는 경우
4. 고의 또는 임의로 물량을 산출하여 공정한 입찰을 저해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5. 물량내역작성허용공종 이외의 세부공종의 물량내역을 수정한 경우
6. 기타 우리공사가 입찰공고문, 현장설명서 또는 승인 회신한 내용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사유

제20조(시공계획심사) ① 계약담당부서의 장은 제15조에 따라 물량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제16조에 따른 물량심사점수를 포함하여 최고점인 자(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다)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시공계획을 심사한다.

- ② 우리공사는 제22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에서 시공계획을 심사하게 한다.
- ③ 시공계획심사는 심사대상자가 제출한 시공계획서로 한다.

제21조(낙찰자 결정) ① 우리공사는 제14조의 종합심사 점수가 최고점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고난이도공사의 경우에는 물량·시공계획 심사대상자의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심사 점수가 차순위 물량·시공계획 심사대상자의 종합심사 점수(물량심사점수와 시공계획 심사점수 제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의 물량·시공계획 심사 없이도 물량·시공계획 심사대상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다.

② 입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한다.

1. 제6조제1항에 해당하는 입찰자
2.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출내역서가 우리공사 입찰금액 심사시스템에서 판독되지 않는 입찰자

③ 종합심사 결과 최고점인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1. 공사수행능력점수와 사회적 책임점수의 합산점수(사회적 책임점수는 공사수행능력점수의 배점한도 내에서 가산한다)가 높은 자
2. 균형가격 근접자, 다만, 균형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88 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금액이 낮은 자

가. <삭제>

나. <삭제>

3. 사회적책임 심사항목을 제외한 공사수행능력 점수가 높은 자
4. 사회적책임의 각 심사항목별 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높은 자
(최종 합산한 점수는 가점범위(0~+2점)보다 낮을 수 있음)
5.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우리공사에서 종합심사낙찰제로 낙찰받은 계약금액(공동수급체로 낙찰받은 경우에는 전체 공사부분에 대한 지분율을 적용한 금액을 말한다)이 적은 자

6. 추천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입찰금액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순공사원가'라 한다)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한다.

1.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는 다음 각목과 같이 산정한다.

가.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 설계금액 중 순공사원가 × (예정가격 ÷ 설계금액)

나. 가목의 계산결과 소수점처리는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절상한다.

2.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에 100분의 98을 곱한 금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 (98÷100)

나. 가목의 계산결과 소수점처리는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절상한다.

제 3 장 심사위원회 등

제22조(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계약담당부서의 장은 제20조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동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내부직원 및 분야별 외부전문가 등 10인 이내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회의를 주관하고 평가에는 참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제외한 심사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최한다.

④ 심사대상자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 및 결과에 대해서는 이의제기 및 열람을 요구 할 수 없다.

⑤ 위원회 심사 완료 후 계약체결일 이전에 종합심사 점수 1순위 업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리공사의 직권으로 재심사를 할 수 있다.

1. 심사대상자가 공정한 심사를 방해한 행위로 심사 의결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심사위원이 심사대상자와 사전 접촉을 하여 심사 의결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신고한 경우
3. 심사대상자가 제출한 심사서류에 중대한 착오 등이 포함된 것으로 판명되어 재심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심사위원회의 의결이 관련법규 및 심사기준에 명백히 위반한 내용을 포함하여 재심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기타 우리공사가 재심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⑥ 이 기준에 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우리공사 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3조 (결격사유 등) ① 입찰자가 부도, 파산, 해산, 부정당업자 제재, 영업정지(건설업 등의 등록말소, 취소 포함), 입찰 무효 등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이하 이 조에서 “결격사유”라 한다)한다.

② 공동수급체가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 구성원의 결격사유는 다음과 같다.

1.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대표자의 결격사유는 당해 공동수급체의 결격사유로 본다.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대표자 이외 구성원의 결격사유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고 잔존구성원의 시공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하거나 결격사유가 발생한 구성원을 대신할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도록 하여 재심사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해석에 있어 부도 및 파산의 경우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기업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정상적인 금융거래의 재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보지 아니한다.

제24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 등에 대한 처리) ① 계약담당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위조, 변조,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 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제25조(재심사) ① 입찰자는 우리공사에서 종합심사점수(시공계획심사 제외)를 통보한 경우 이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통보서 등에 기한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이에 의함) 심사자료 열람 및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 요청서를 접수한 경우 재심사를 하여 요청자에게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입찰결과의 공개 등) 계약담당부서의 장은 개찰 후 즉시 입찰참가업체별 입찰금액을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등에 따라 입찰관련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고난이도공사의 경우, 제17조 제1항에 따라 입찰자에게 물량내역을 작성하도록 허용한 세부공종에 대해서는 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설계서 등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우리공사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제28조(계약이행 여부의 점검) ① 공사주관부서의 장은 종합심사낙찰제에서 낙찰자가 제출한 배치기술자 투입계획, 하도급계획 및 시공계획(고난이도공사에 한한다)에 대하여 각각의 이행여부를 매년 2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위반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종합심사 등을 위해 계약담당부서의 장이 해당 위반사실의 제출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점검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은 우리공사 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9조(기타사항) ①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 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의 규정을 준용 할 수 있다.

② 우리공사는 공사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문 등에 명시하고, 이 기준과 달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5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공비율 평가방법에 관한 적용례)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로서 시공비율 산정 시 국토교통부에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시공능력 평가액을 공시하기 전에는 시공비율 대신 공동수급협정서상 참여지분율을 시공비율로 적용할 수 있다.

[별표1-1] 일반공사의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심사분야	심사 항목		배 점
공사수행능력 (50점)	전문성 (29점)	시공실적 (시공인력)	15점 (15점)
		매출액 비중	4점
		배치 기술자	10점
	역량 (20점)	시공평가 결과	19점
		공동수급체 구성	1점
	일자리 창출 (1점)	건설인력 고용	1점
	사회적 책임 (가점 0점~+2점)	건설안전	-0.8점~+0.8점
		공정거래	0.4점
		지역경제 기여도	0.8점
	소 계		50점
입찰금액 (50점)	입찰금액		50점
	가격 산출의 적정성(감점)	단가	-10점
		하도급계획	-10점
	소 계		50점
계약신뢰도	배치기술자 투입계획 위반(감점)	배치기술자 심사점수에서 1.0점(1건당) 감점	
	하도급계획 위반(감점)	입찰금액 심사점수에서 1.0점(1건당) 감점	
	고난이도 공사의 시공계획 위반(감점)	시공평가 결과점수에서 0.1점(1건당) 감점	
합 계		100점	

주) 사회적 책임의 각 심사항목별 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음(-)인 경우는 0점으로 한다.

[별표1-2] 고난이도공사의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심사분야	심사 항목		배 점
공사수행능력 (50점)	전문성 (29점)	시공실적 (시공인력)	15점 (15점)
		매출액 비중	4점
		배치 기술자	10점
	역량 (20점)	시공평가 결과	19점
		공동수급체 구성	1점
	일자리 창출 (1점)	건설인력 고용	1점
	사회적 책임 (가점 0점~+2점)	건설안전	-0.8점~+0.8점
		공정거래	0.4점
		지역경제 기여도	0.8점
	소 계		50점
입찰금액 (50점)	입찰금액		50점
	가격 산출의 적정성(감점)	단가	-10점
		하도급계획	-10점
		물량	-10점
		시공계획	-10점
소 계		50점	
계약신뢰도	배치기술자 투입계획 위반(감점)	배치기술자 심사점수에서 1.0점(1건당) 감점	
	하도급계획 위반(감점)	입찰금액 심사점수에서 1.0점(1건당) 감점	
	시공계획 위반(감점)	시공계획 심사점수에서 0.1점(1건당) 감점	
합 계		100점	

주) 사회적 책임의 각 심사항목별 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음(-)인 경우는 0점으로 한다.

[별표1-3] 간이형 공사의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심사분야	심사 항목		배 점
공사수행 능력 (40점)	경영상태 (10점)	경영상태	10점
	전문성 (24점)	시공실적	12점
		배치 기술자	12점
	역량 (6점)	공동수급체 구성	6점
	사회적 책임 (가점 0점~+2점)	건설인력고용	0.4점
		건설안전	-0.6점~+0.6점
		공정거래	0.4점
		지역경제 기여도	0.6점
소 계		40점	
입찰금액 (60점)	입찰금액		60점
	가격 산출의 적정성(감점)	단가	-4점
		하도급계획	-2점
	소 계		60점
계약신뢰도	배치기술자 투입계획 위반(감점)	배치기술자 심사점수에서 0.5점(1건당) 감점	
	하도급계획 위반(감점)	입찰금액 심사점수에서 0.5점(1건당) 감점	
	고난이도 공사의 시공계획 위반(감점)	시공실적 결과점수에서 0.05점(1건당) 감점	
합 계		100점	

주) 사회적 책임의 각 심사항목별 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음(-)인 경우는 0점으로 한다.

[별표2-1] 공사수행능력 심사방법([별표1-1], [별표1-2])

1. 시공실적 평가방법

심사요소	배 점	평 점	비고
규모(연장 또는 용량 및 연면적 등 기준) 또는 금액(업종 등의 시공실적경험)	15점	계산식에 의함	

가. 시공실적 심사는 입찰참가업체가 보유한 입찰공고일 기준 10년 이내 준공된 해당 발주공사와 동일한 공법, 구조형식 등의 시공실적경험을 건수, 금액, 규모 등의 기준으로 합산하여 심사하는 것으로서, 3개 이내의 항목을 입찰공고문에 명시하여 심사한다. 다만, 우리공사가 경쟁성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0년 이내의 범위에서 준공된 시공실적을 기준으로 심사할 수 있다.

나. 동일공사 시공실적 인정기준

업종	공종	동일공사(공법, 구조형식)	인정규모
토목	교량	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트러스교, ED교, 연도교, 연육교, 해상교량, 경간 100m 이상 포함 교량, 경간 200m 이상 포함 교량, 경간 50m 이상 포함 콘크리트박스거더형식 교량 (가설공법은 입찰공고문에 명시할 수 있음)	· 길이 200m 이상
		경간 50m 이상 포함 거더형식 교량 (콘크리트박스거더형식 제외)	· 길이 100m 이상
	* 최소규모 : 최소교폭 7.2m이상 단일교량으로서 교통시설만 인정		
터널	비개착식 교통터널 (NATM, TBM, SHIELD, 침매 중 택일), 개착식 교통터널		· 길이 200m 이상
	* 최소규모 : 최소내공단면적 60.2㎡ 이상 또는 2차선(폭7.2m) 이상의 단일터널, 단 1km 이상의 교통터널은 내공단면적 불문		
고속도로	고속국도(해외 시공실적 포함) * 4차로 환산연장 적용		· 길이 1km 이상

- 주1) 당해공사에 포함된 교량 또는 터널이 여러 개일 경우 평가기준 규모는 합산하여 평가한다.
- 주2) 실적은 인정규모 이상의 실적을 말한다.
- 주3) 실적증명서에 교량 또는 터널의 상.하행선이 분리된 것으로 명시된 경우 신청자가 제출한 실적명세서와 관계없이 상.하행선을 분리하여 각각 단일공사실적으로 인정한다. 단, 동일한 단위구조물(체)로서 상.하행선 연장이 다른 경우에는 합산연장의 1/2로 하며, 복층교량은 상.하층중 유리한 연장을 적용한다.

- 주4) 동일공사 최소 인정금액은 단일공사실적 30억원 이상으로 한다.
- 주5) 고속도로의 정의 및 적용은 우리공사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집행기준”을 준용한다.
- 주6) 동일공사의 실적은 준공금액(지급자재비 포함) 30억원 이상으로서 인정규모이상 실적만 해당한다.
- 주7) 복합공종(고속도로 내 교량, 터널이 포함된 경우) 준공실적의 경우 교량, 터널 및 고속도로 실적 모두 인정한다.
 - 예) 5Km 고속도로 실적(전구간 4차로 신설)에 1Km 교량과, 1Km 터널이 포함된 경우 고속도로 5Km, 교량 1Km, 터널 1Km 실적으로 인정 평가

다. ‘동일공사 시공실적 점수’는 입찰공고문에 명시된 동일공사 실적에 대해서 입찰자가 제출한 실적을 년도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합산 평가한다.

라. 심사대상 동일공사가 복합공종(예 : 교량, 터널, 고속도로 등)으로 구성될 경우 시공실적 점수는 각 공종별 시공실적점수에 해당공사의 공종별 보합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산정한다.

마. 보합비율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입찰공고문에 명시한다.

- 예) 교량(200억원), 터널(300억원)이 포함된 1,000억원 규모의 고속도로 건설공사의 경우
 - 보합비율 : 교량 20%, 터널 30%, 고속도로 50%

바. 동일공사(공법)의 종류나 시공실적 인정범위는 본 기준상에 동일 분류가 없거나 적용이 곤란한 경우, 입찰공고문에 별도로 정하여 집행할 수 있다.

사. 동일공사 시공실적 평가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text{◎시공실적 점수} = \text{배점} \times \frac{\sum_{i=1}^n \text{동일 공사 실적}_i \times A_i}{\text{당해공사의 동일 공사 규모} \times B}$	(단, 평가점수는 만점 초과 불가)
---	-------------------------

- 주1) A는 실적의 경과기간(입찰공고일 기준 준공일로 판단)에 따른 조정계수로 아래와 같다.
 - 3년 미만의 실적 : 1, 3년 이상 ~ 5년 미만의 실적 : 0.9, 5년 이상의 실적 : 0.8
- 주2) B는 만점기준을 조정하는 계수로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1~5범위 이내에서 결정하여 입찰공고문에 명시한다.

아. 시공실적의 제출 및 심사에 관하여는 우리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 <별표4> 시공실적 제출 및 심사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자.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동일공사 시공실적을 합산하여 심사한다. 단, 동일 업종 또는 공종그룹 실적으로 평가하는 경우 각 구성원의 시공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한다.

차. 고속도로 신설, 확장공사의 경우 동일공사 시공실적으로 심사하며, 그 외의 기타공사는 해당 발주공사와 동일한 업종(토목, 건축 등) 또는 공종그룹(교통/수자원/기타 토목, 주거/비주거 등) 시공실적으로 심사한다. 다만, 기타공사의 경우 공사의 특성상 동일공사 시공실적으로 심사가 필요한 경우 동일공사 시공실적으로 심사할 수 있다.

카. 동일업종 또는 공종그룹 시공실적 평가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text{◎시공실적 점수} = \text{배점} \times \frac{\text{최근5년간당해업종또는공종그룹공사실적액}}{\text{설계금액} \times C}$	(단, 평가점수는 만점 초과 불가)
---	------------------------

주1) C는 만점기준을 조정하는 계수로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1~5범위 이내에서 결정하여 입찰공고문에 명시한다.

타.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의 경우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 1) 상대 업역에 참여한 자의 실적 인정 방법은 국토교통부 고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에 따른다.
- 2)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2021년 1월 1일 이후의 건설공사실적은 건설사업자가 상대시장(종합건설사업자의 경우 전문공사를, 전문건설사업자의 경우 종합공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수행한 건설공사실적으로 평가한다.
- 3)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전환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전환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업종전환 이후의 건설공사실적은 건설사업자가 상대시장에서 수행한 건설공사 실적으로 한다.
- 4) 업종 실적 시공실적 평가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text{◎시공실적 점수} = \text{배점} \times \frac{\text{최근5년간당해업종공사실적액}}{\text{설계금액} \times D}$	(단, 평가점수는 만점 초과 불가)
---	------------------------

주1) D는 만점기준을 조정하는 계수로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1~5범위 이내에서 결정하여 입찰공고문에 명시한다.

- 5)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로서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한 경우 시공실적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 5-1)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경우 전문건설사업자의 시공실적은

업종 실적으로 심사하며, 해당 종합공사를 추정금액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평가하여 합산한다. 다만, 2021.1.1. 이후 전문건설사업자의 자격으로 취득한 종합공사 실적을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종합공사 실적을 우선 평가(종합건설사업자의 종합공사 평가방법과 동일)하고 배점한도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잔여 배점을 기준으로 본문에 따라 전문업종별 실적을 평가하여 합산한다.

5-2) 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건설사업자가 함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

- (1) 종합건설사업자는 동일공사 시공실적, 동일업종, 동일 공종그룹 시공실적 중 입찰공고문에 명시한 방법으로 평점을 산정한다.
- (2) 전문건설사업자의 전문업종별 실적은 전문건설사업자별 해당 전문업종 시공실적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한다. 다만, 2021.1.1.이후 전문건설사업자의 자격으로 취득한 종합공사 실적을 보유한 경우 해당 종합공사 실적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하며, 배점한도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잔여 배점을 기준으로 본문에 따라 해당 전문업종 공사실적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한다.
- (3)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참여하는 전문건설사업자인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 제외)의 업종 실적은 참여하는 전문업종별로 시공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참여하는 전문업종 설계금액×D×시공비율” 까지만 인정한다.
- (4) (2) 내지 (3)의 경우 전문건설사업자의 전문업종별 평점은 각각의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구분한 배점을 초과할 수 없다.

5-3) 전문건설사업자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

- (1) 전문건설사업자의 전문업종별 실적은 전문건설사업자별 해당 전문업종 시공실적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한다. 다만, 2021.1.1.이후 전문건설사업자의 자격으로 취득한 종합공사 실적을 보유한 경우 해당 종합공사 실적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하며, 배점한도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잔여 배점을 기준으로 본문에 따라 해당 전문업종 공사실적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한다.
- (2)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참여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 제외)의 업종 실적은 참여하는 전문업종별로 시공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참여하는 전문업종 설계금액×D×시공비율” 까지만 인정한다.
- (3) (1) 내지 (2)의 경우 전문건설사업자의 전문업종별 평점은 각각의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구분한 배점을 초과할 수 없다.

5-4) 전문건설사업자의 시공비율은 전문업종별로 각각 산정하여 적용한다.

1-1. 시공인력 평가방법

심사요소	배점	일반공사		고난이도공사		비고
		등급	평점	등급	평점	
해당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현황	15점	A. 15.0이상	15.00점	A. 20.0이상	15.00점	
		B. 13.5이상	14.00점	B. 18.5이상	14.50점	
		C. 12.0이상	13.00점	C. 17.0이상	14.00점	
		D. 10.5이상	12.00점	D. 15.5이상	13.50점	

가. 시공인력 심사는 입찰참가업체가 '1. 시공실적 평가' 대신 동일공사 참여경험이 있는 인력을 제출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시공실적과 시공인력은 중복하여 평가하지 아니한다.

나. 등급 산정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text{◎등급} = \text{“}\sum(\text{등급계수} \times \text{경력계수} \times \text{관리능력계수})\text{”}$$

- . 등급계수 : 기술자 등급(특급 1.0, 고급 0.75, 중급 0.5, 초급 0.25)
- . 경력계수 : 동일공사 현장경력(3년 이상 1.0, 5년 이상 1.5, 10년 이상 2.0)
- . 관리능력계수 : 동일공사 현장대리인경력(2년 미만 1.0, 2년 이상 1.1, 5년 이상 1.3)

다. 시공인력 점수는 동일공사 시공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15인 이내의 기술자(1개 이상의 동일공사로 평가할 경우 각 동일공사별 15인 이내의 기술자)로 평가하며, 동일공종그룹 배치기술자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라. 심사대상 동일공사가 복합공종(예 : 교량, 터널, 고속도로 등)으로 구성될 경우 시공인력 점수는 동일공사별 시공인력 점수에 보합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산정하며, 보합비율은 입찰공고문에 명시한다.

마. 시공인력은 시공실적 증명서(제1호 기준을 충족한 증명서에 한함)에 의거 한국 건설기술인협회 등 관련기관에서 확인하여 발급한 경력확인서 또는 경력증명서에 의해 확인한다.

바.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 각각의 보유내용(보유 인력별 '등급계수×경력계수×관리능력계수'의 합)에 시공비율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합산하여 등급에 따라 심사한다.

사. 우리공사는 해당공사의 난이도, 해당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입찰공고에 시공인력 심사 대상이 아님을 명시한 경우에는 시공인력 심사로 대체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매출액 비중 평가방법

심사요소	배점	등 급	평점
최근 10년간 동일공종 그룹 국내 기성실적 총액이 업종별 국내 기성실적총액 에서 차지하는 비중 ※ 업종 및 동일공종그룹은 입찰공고문에 명시	4점	A. 50%이상	4.00
		B. 40%이상~50%미만	3.90
		C. 30%이상~40%미만	3.80
		D. 20%이상~30%미만	3.70
		E. 20%미만	3.60

가. 매출액 비중 심사는 입찰참가 업체의 최근 10년간 동일공종그룹 매출액이 동 업체의 해당 업종(토목, 건축)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심사하는 '최근10년간 동일공종그룹 매출액 비중'을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나. '최근 10년간 동일공종그룹 매출액 비중'의 평가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 '최근 10년간 동일공종그룹 매출액 비중' 계산식

$$\text{등급} = \frac{\sum_{i=1}^n \text{동일공종그룹 국내기성실적총액}_i \times A_i}{\sum_{i=1}^n \text{해당업종 국내기성실적총액}_i \times A_i} \times 100$$

- * A : 실적의 경과기간에 따른 조정계수, 입찰공고일 기준 준공일이 [※연도기준]
- . 최근3년 미만인 실적 : 1
 - . 최근3년 이상 5년 미만인 실적 : 0.9
 - . 최근5년 이상인 실적 : 0.8

다. 동일공종그룹 구분은 다음과 같다.

업종	동일공종그룹	동일공종그룹에 포함되는 공사
토목	교통시설	도로, 교량, 터널, 공항, 지하철, 철도
	수자원시설	항만, 댐, 운하, 하천, 치수, 상하수도, 정수장
	기타토목	택지조성 등 교통시설, 수자원시설에 포함되지 않은 공사
건축	주거시설	단독주택 및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상업겸용 건물
	비주거시설	주거시설에 포함되지 아니한 시설

라. 심사에 사용되는 실적총액은 관련협회의 실적자료를 활용하되,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의 국내 기성실적으로 한다.

마.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 각각의 평점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바.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로서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한 경우 전문 건설사업자의 공종그룹실적은 국토교통부 고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에 따라 인정된 전문업종 실적을 공종 그룹별 실적으로 분류하여 적용하며, 당해 공사의 전문업종에 해당하는 공종 그룹실적만 평가대상에 포함한다.

3. 배치기술자 평가방법

심사 요소	배점	평가요소		세부배점	평점	비고
현장 대리인	5.5점	고속도로 건설공사 현장대리인 및 기타직위 근무 경력		5.5점	계산식에 의함	배점초과 불가
분야별 책임자	4.5점	시공	동일공종그룹 근무 경력	1.5점		분야별 배점초과 불가
		품질	동일업종 근무 경력	1.5점		
		안전	동일업종 근무 경력	1.5점		
감점	-10점	배치예정기술자 교체		위반 1건당 배치기술자 심사점수에서 1.0점씩 감점		

가. 배치기술자 심사는 입찰자가 공사현장에 배치할 현장대리인 및 분야별(시공·안전·품질) 책임자의 시공참여 경력 심사를 말한다.

나. 배치기술자 시공경력 평점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현장대리인

$$\text{현장대리인 점수} = \left(\frac{\text{고속도로 현장대리인 근무일수}}{5\text{년} \times 365} + \frac{\text{고속도로 현장 기타직위 근무일수}}{7\text{년} \times 365} \right) \times \text{배점}$$

* 기타직위의 범위 : 시공(공사, 공무), 품질, 안전, 환경업무

◎분야별(시공·품질·안전) 책임자

$$\text{분야별 책임자 점수} = \frac{\text{근무일수}}{5\text{년} \times 365} \times \text{세부배점}$$

* 시공 : 동일공종그룹 공사(시공분야) 근무일수
 * 품질, 안전 : 동일업종 공사(품질, 안전분야) 근무일수

※공사규모에 따라 시공책임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시공책임자별 경력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정

- 다. 배치기술자는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입찰참가업체 소속 임·직원이어야 하고, 입찰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재직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평가점수의 80%만 인정한다.
- 라. 배치기술자는 '다'목을 확인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가입 확인자료(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 보험 중 택1)를 제출하여야 한다.
- 마. 분야별 책임자의 경력심사는 해당 공사의 주요 부문(시공, 품질, 안전)별 1인의 책임자에 대하여 동 배치예정자의 과거 동일공종그룹(시공) 또는 동일업종(품질, 안전) 공사 참여경력을 심사하되, 시공책임자의 경우는 공사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심사인원을 달리한다.

공사규모	시공책임자 배치인원
추정가격 500억원 미만	1인
추정가격 5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2인
추정가격 1,000억원 이상	3인

- 바. 시공책임자의 경력심사는 동 배치예정자의 과거 동일공종그룹 공사 시공(공사, 공무)관련 참여경력을 심사하며, 품질책임자 또는 안전책임자의 경력심사는 각각 동 배치예정자의 과거 동일업종 공사의 품질 또는 안전 관련업무 경력을 심사한다.
- 사.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로서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한 경우 분야별 책임자 참여경력 평가 시 하도급으로 참여한 경력은 50%를 인정한다.

아. 현장대리인 및 분야별 책임자의 자격요건 및 참여경력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자격요건

배치기술자	자 격 요 건
현장대리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5]의 해당 규모별 건설기술자
시공분야 책임자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별표3]의 설계·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중 고급건설기술자 이상
품질분야 책임자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별표3]의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중 고급건설기술자 이상
안전분야 책임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4]의 안전관리자

2) 참여경력요건

배치기술자	참 여 경 력 인 정 요 건
현장대리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신고한 경력 중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별표3] 제3호의 시공분야의 현장대리인 경력
시공분야 책임자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신고한 경력 중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별표3] 제3호의 시공분야의 현장대리인 또는 시공 참여기술자 경력
품질분야 책임자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신고한 경력 중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별표3] 제3호의 품질관리분야의 품질관리자 또는 품질관리 참여기술자 경력
안전분야 책임자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신고한 경력 중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별표3] 제3호의 안전관리분야의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관리 참여기술자 경력

- 자. 공동수급체의 경우 공동수급체가 공동으로 제출한 기술자로 평가하며, 시공비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현장대리인은 반드시 공동수급체의 대표사에 소속된 자로 하여야 한다.
- 차. 시공참여경력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관련 기관에서 발급한 경력확인서 또는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확인한다.
- 카. 낙찰자는 원칙적으로 배치기술자를 교체하지 못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해당공사 공사주관부서장((1)에서 (3)은 공사시행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당초 심사 시 취득한 점수 이상의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기술자(배치기술자의 변경요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1)에서 (3) 및 (5)의 경우에는 변경요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근무할 것을 요하지는 아니한다)로 대체할 수 있다.
 - (1) 배치기술자의 사망, 퇴직 등 근무관계가 종료된 경우
 - (2) 배치기술자의 질병, 출산 등으로 정상적인 근무가 곤란한 경우
 - (3) 배치기술자가 해당 현장에 배치된 때로부터 3년 이상이 경과되고 해당 공사의 공정률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 (4) 우리공사가 발주하는 입찰공고일이 동일한 2개 이상의 공사에 동일한 배치기술자 투입계획을 제출하여 2개 이상의 공사에 낙찰예정인 경우
- (5)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공사주관부서장이 승인한 경우

타. 공사주관부서의 장은 매년 2회 이상 배치기술자 투입계획 준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승인없이 배치기술자를 교체하는 등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즉시 그 위반사실을 해당업체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위반사실을 통보한 날로부터 2년 동안 우리공사가 발주하는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에서 위반사실 통보 1건당 1.0점을 감점한다. 다만, 우리공사가 발주하는 입찰공고일이 동일한 2개 이상의 공사에 동일 기술자를 투입하는 계획서를 제출하여 2개 이상의 공사에 낙찰예정인 경우로서 해당 기술자를 배치하지 못하는 공사에 대하여 계약담당부서 장이 요청한 기한까지 동등 점수 이상을 획득할 수 있는 기술자로 교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감점하지 아니한다.

파. 배치기술자 투입계획 위반사실 통보 건수는 해당 기술자 1인당 1건으로 산정하고, 감점대상은 승인을 받지 않고 소속 배치기술자를 교체한 공동수급체 전체 구성원(분담이행 구성원 제외)으로 하되, 감점 시 불이행한 공사에서의 시공비율 및 배치예정공사에서의 시공비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시공평가결과 평가방법

심사요소	배점	등 급	평 점
시공평가 결과	19점	A. 95점 이상	19.00
		B. 93점 이상 ~ 95점 미만	18.90
		C. 91점 이상 ~ 93점 미만	18.80
		D. 89점 이상 ~ 91점 미만	18.70
		E. 87점 이상 ~ 89점 미만	18.60
		F. 86점 이상 ~ 87점 미만	18.50
		G. 85점 이상 ~ 86점 미만	18.40
		H. 84점 이상 ~ 85점 미만	18.30
		I. 83점 이상 ~ 84점 미만	18.20
		J. 82점 이상 ~ 83점 미만	18.10
		K. 82점 미만	18.00

가. 시공평가결과 심사는 입찰참가업체의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에 의한 시공평가결과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나. 시공평가결과는 최근 3년간 입찰참가 업체가 동일공종그룹 공사에 대해 받은 시공평가결과 점수(2015.1.1 이후 시공평가결과에 한한다.)를 공사규모(지급자 재비 포함)에 따라 가중 평균하여 심사한다. 단,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평가결과는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받은 시공평가결과를 적용하며, 해당업체의 참여비율에 따른 실적금액(이하 '지분금액'이라 한다.)에 대해서만 시공평가결과 점수를 인정한다.

다. 공동수급체의 시공평가결과 심사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 시공평가 점수 =

$$\frac{\{(A\text{공사 지분금액} \times \text{시공평가점수}) + \dots + (N\text{공사 지분금액} \times \text{시공평가점수})\} \times \text{시공비율} + \{(a\text{공사 지분금액} \times \text{시공평가점수}) + \dots + (n\text{공사 지분금액} \times \text{시공평가점수})\} \times \text{시공비율} + \dots + \{(a\text{공사 지분금액} \times \text{시공평가점수}) + \dots + (\pi\text{공사 지분금액} \times \text{시공평가점수})\} \times \text{시공비율}}{(A\text{공사지분금액} + \dots + N\text{공사지분금액}) \times \text{시공비율} + \{(a\text{공사지분금액} + \dots + n\text{공사지분금액}) \times \text{시공비율} + \dots + (a\text{공사 지분금액} + \dots + \pi\text{공사 지분금액}) \times \text{시공비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가,나...마 업체일 경우 “A~N 공사는 ‘가’업체의 공사” “a~n 공사는 ‘나’업체의 공사”..., “a~π 공사는 ‘마’업체의 공사”

※ 시공평가 점수는 소수점 아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라. 입찰참가업체의 시공평가결과는 한국시설안전공단이 관리하는 자료로 평가한다.

마. 동일공종그룹에 대한 시공평가 결과가 없는 업체의 경우 해당 업체가 받은 동일업종에 대한 시공평가 결과를 적용한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가 동일업종에 대한 시공평가 결과도 없는 경우에는 그 대표사가 속한 공동수급체는 계산식에 관계없이 D등급으로 평가하며, 구성원이 동일업종에 대한 시공평가 결과도 없는 경우에는 시공평가 결과 산정 시 제외한다.

바. <삭 제>

사. <삭제>

아.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로서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한 경우 E등급(18.6점)을 적용한다.

자. 당해 공사가 전문공사인 경우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5. 공동수급체 구성 평가방법

심사요소	배점	평가요소	평점	비고
공동수급체 구성 평가	1	공동수급체 구성 여부와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아래 '나'에 의함	

가. 공동수급체 구성 심사 점수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를 제외한 구성원의 참여 비율 합으로 산정한다.

나. 공동수급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는 다음과 같다.

공사규모 (추정가격)	참여비율 (구성원)	평가요소				
		단독	15% 미만	15%이상~ 20%미만	20%이상~ 25%미만	25%이상
1,000억원 이상		0.5	0.6	0.7	0.8	1
5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0.5	0.7	0.8	0.9	1
3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1				

다. 우리공사는 가. 및 나.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0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하여는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업체 현황 등을 고려하여 공동수급체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건설인력 고용

심사요소	배 점	등 급		평 점	비고
		(고용 탄력성:표준화 점수의 해당범위)			
고용 탄력성	1.0	A. 고용탄력성 1등급		1	
		B. 고용탄력성 2등급		0.92	
		C. 고용탄력성 3등급		0.84	
		D. 고용탄력성 4등급		0.76	
		E. 고용탄력성 5등급		0.68	
		F. 고용탄력성 6등급		0.60	
근로기준법 준수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횟수)	-0.2	1등급		-0.04	
		2등급		-0.08	
		3등급		-0.12	
		4등급		-0.16	
		5등급		-0.20	

- 가. 건설인력 고용 심사는 고용탄력성 심사 점수에서 근로기준법 준수 심사 점수를 차감하여 산정한다.
- 나. 고용탄력성은 표준화된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감률에서 표준화된 기성액 증감률을 차감한 값을 말한다.
- 1) 심사대상 기간은 입찰공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전년도부터 직전 3개년도로 한다.
 - 2)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입찰자의 본사 및 입찰자가 원수급인인 건설현장에서 신고된 피보험자 수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해당 건설현장에서 신고된 피보험자 수는 원수급인이 신고한 피보험자 수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고용보험법」 제15조 제2항에 의해 하수급인이 신고한 피보험자 수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 3) 기성액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대한건설협회에서 산정한 실적액,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산정한 실적액,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산정한 실적액,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한국소방설비협회에서 산정한 실적액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 4) 피보험자 증감률과 기성액 증감률은 각 2개 연도별 전년대비 증감률을 가중평균한 값으로 하되 최근의 증감률에 0.6을 곱하고 이보다 과거의 증감률에 0.4를 곱한 값으로 한다.
 - 5) 피보험자 증감률과 기성액 증감률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국토교통부 장관의 위탁을 받은 대한건설협회에 종합건설업을 등록한 업체를 모집단으로 하여 표준화하며, 표준화식은 아래와 같다.
· 표준화 계산식 = (변수값-평균)/표준편차
- 다. 근로기준법 준수 점수는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의한 임금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횟수에 따라 감점하여 산정한다.
- 1) 심사대상 기간은 입찰공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도부터 직전 3개년도로 한다.
 - 2) 명단공개 사업주의 범위는 입찰자뿐만 아니라 「고용보험법」 제15조 제2항에 의하여 평가대상기간동안 입찰자의 이름으로 고용보험 시스템에 등록된 공사현장에 참여한 하도급업자를 포함한다.
 - 3) 입찰자의 명단공개 횟수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 명단을, 하수급인의 명단공개 횟수는 한국고용정보원 자료를 활용하여 확인한다.
- 라. 둘 이상의 업체가 공동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공동이행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각 구성원의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하되, 전체 공동수급체의 고용탄력성 점수에서 전체 공동수급체의 근로기준법 준수 점수를 차감하여 산정한다.
- 마. 건설인력 고용 심사 점수는 해당 입찰자(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고용탄력성 점수 범위 내에서 근로기준법 준수 점수를 감점한다.
- 바.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로서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한 경우 고용 탄력성 점수는 기본점수(0.6점)를 적용하고, 근로기준법 준수 점수의 합으로 산정한다.

[별표2-2] 공사수행능력 심사방법([별표1-3])

1. 경영상태 평가방법

심사요소	배점	평점	비고
신용평가등급	10	아래 표에 의함	

가. 경영상태평점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경영상태평점
A+이상	A2+이상	A+에 준하는 등급	10
A0	A20	A0에 준하는 등급	10
A-	A2-	A-에 준하는 등급	10
BBB+	A3+	BBB+에 준하는 등급	10
BBB0	A30	BBB0에 준하는 등급	10
BBB-	A3-	BBB-에 준하는 등급	10
BB+,BB0	B+	BB+,BB0에 준하는 등급	10
BB-	B0	BB-에 준하는 등급	10
B+,B0,B-	B-	B+,B0,B-에 준하는 등급	9.8
CCC+이하	C이하	CCC+에 준하는 등급	9.6

- 나. 모든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신용평가등급을 각각 평가하며, 입찰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이행방식(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및 출자비율에 관계없이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경영상태 적격요건을 심사합니다.
- 다. 당해공사가 복합업종으로 구성된 경우의 경영상태 심사는 구성원의 시공비율에 업종별 비율을 곱하여 평가하며, 업종별 비율은 해당업종 구성비율로 입찰공고시 명시한 전체공사의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대비 해당업종의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비율을 말한다.
- 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이하 '신용정보업자'라 한다.)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마감일 현재에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조회된 가장 최근 평가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할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 마.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다만, 입찰공고일 이전에

합병한 업체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은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동 평가서가 없을 경우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시스템에 등록된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 바. 공동수급체의 경영상태 심사는 구성원별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심사한다.
- 사.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입찰 적격자 선정 후 낙찰자 선정 이전에 당해 사실이 발생한 경우 포함, 다만 결격사유가 입찰서제출 마감일 이전에 소멸되는 경우는 제외)는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 아.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 경영상태평점의 최하점인 9.6점을 부여한다.

2. 시공실적 평가방법

가. 실적제한 이외 공사

심사요소	배점	계산식	평점	비고
실적금액	12	배점 × $\frac{\text{최근 5년간 당해업종 공사실적액}}{\text{설계금액} \times B}$	계산식에 의함	

나. 실적제한 공사

심사요소	배점	등급	평점	비고
규모 또는 금액	12	A. 200% 이상	12점	
		B. 165% 이상	11점	
		C. 130% 이상	10점	
		D. 90% 이상	9점	
		E. 50% 이상	8점	
		F. 50% 미만	7점	

- 다. 실적제한 이외 공사의 평가는 업종실적으로 평가하며 관련협회의 확인금액을 적용하고 관련협회의 통계완료 최종년도를 기준으로 최근 5년간 동일업종 실적을 평가한다.
- 라. 실적제한 이외 공사 계산식의 B는 만점기준을 조정하는 계수로서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입찰공고문에 명시하고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경우 5를 적용한다.
- 마. 실적제한 공사의 등급 산정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p>◎등급 =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 A ÷ 기준규모</p> <p>※ 우리공사가 경쟁성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0년 이내의 범위에서 준공된 시공실적을 기준으로 심사할 수 있음</p> <p>. 공사실적 인정기준, 기준규모는 입찰공고문에 명시</p>
--

바. 실적제한 공사의 당해 공사의 특성 및 규모 등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공실적의 등급 및 평점을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A는 실적의 경과기간(입찰공고일 기준 준공일로 판단)에 따른 조정계수로 해당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입찰공고문에 별도로 명시할 수 있으며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경우 조정계수를 적용하지 않는다.

* [A 예시] 3년 미만의 실적 : 1, 3년 이상 ~ 5년 미만의 실적 : 0.9, 5년 이상의 실적 : 0.8

사. 실적제한 공사의 시공실적의 제출 및 심사에 관하여는 우리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 <별표4> 시공실적 제출 및 심사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아. 발주공사가 복합 업종인 경우에는 주된 업종(입찰공고문에 주된 업종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경우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 가장 높은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본다. 이하 [별표2-2]에서 동일하다.)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 등으로 업종별 평가가 필요한 경우 업종별 비율에 따라 나누어 평가할 수 있다.

자. 공동수급체의 경우 각 구성원의 시공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 반영, 경쟁성 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성원별 실적을 합산하여 심사할 수 있다.

차. 시공실적 평가방법은 실적제한 이외 공사로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사의 내용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공사의 수행과 품질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실적제한 공사를 적용할 수 있다.

카. 실적제한 이외 공사에서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참여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 제외)의 시공실적은 참여하는 전문업종별로 시공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참여하는 전문업종 설계금액×B×시공비율" 까지만 인정한다.

타.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의 경우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 1) 상대 업역에 참여한 자의 실적 인정 방법은 국토교통부 고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에 따른다.
- 2)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2021년 1월 1일 이후의 건설공사실적은 건설사업자가 상대시장(종합건설사업자의 경우 전문공사를, 전문건설사업자의 경우 종합공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수행한 건설공사실적으로 평가한다.
- 3)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전환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전환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업종전환 이후의 건설공사실적은 건설사업자가 상대시장에서 수행한 건설공사 실적으로 한다.
- 4)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로서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한 경우 시공실적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경우 전문건설사업자의 시공실적은 실적제한 공사 여부와 관계없이 업종 실적으로 심사하며, 해당 종합공사를 추정금액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평가하여 합산한다. 다만, 2021.1.1. 이후 전문건설사업자의 자격으로 취득한 종합공사 실적을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종합공사 실적을 우선 평가(종합건설사업자의 종합공사 평가방법과 동일)하고 배점한도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잔여 배점을 기준으로 본문에 따라 전문업종별 실적을 평가하여 합산한다.

나) '실적제한 이외 공사'일 경우

(1) 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건설사업자가 함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

(가) 종합건설사업자는 종합업종 시공실적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한다.

(나) 전문건설사업자의 전문업종별 실적은 전문건설사업자별 해당 전문업종 시공실적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한다. 다만, 2021.1.1. 이후 전문건설사업자의 자격으로 취득한 종합공사 실적을 보유한 경우 해당 종합공사 실적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하며, 배점한도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잔여 배점을 기준으로 본문에 따라 해당 전문업종 공사실적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한다.

(다)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참여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 제외)의 업종 실적은 참여하는 전문업종별로 시공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참여하는 전문업종 설계금액×B×시공비율” 까지만 인정한다.

(라) (가) 내지 (다)의 경우 전문업종별 평점은 각각의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구분한 배점을 초과할 수 없다.

(2) 전문건설사업자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

(가) 전문건설사업자의 전문업종별 실적은 전문건설사업자별 해당 전문업종 시공실적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한다. 다만, 2021.1.1. 이후 전문건설사업자의 자격으로 취득한 종합공사 실적을 보유한 경우 해당 종합공사 실적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하며, 배점한도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잔여 배점을 기준으로 본문에 따라 해당 전문업종 공사실적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한다.

(나)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참여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 제외)의 업종 실적은 참여하는 전문업종별로 시공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참여하는 전문업종 설계금액×B×시공비율” 까지만 인정한다.

(다) (가) 내지 (나)의 경우 전문건설사업자의 전문업종별 평점은 각각의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구분한 배점을 초과할 수 없다.

(3) 전문건설사업자의 시공비율은 전문업종별로 각각 산정하여 적용한다.

다) '실적제한 공사'일 경우

(1) 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건설사업자가 함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

- (가) 종합건설사업자는 '나. 실적제한 공사'에 의한 등급으로 평점을 산정한다.
- (나) 전문건설사업자는 '가. 실적제한 이외 공사'의 계산식을 이용하며 전문업종별 실적은 전문건설사업자별 해당 전문업종 시공실적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한다. 다만, 2021.1.1.이후 전문건설사업자의 자격으로 취득한 종합공사 실적을 보유한 경우 해당 종합공사 실적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하며, 배점한도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잔여 배점을 기준으로 본문에 따라 해당 전문업종 공사실적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한다.
- (다)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참여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 제외)의 업종 실적은 참여하는 전문업종별로 시공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참여하는 전문업종 설계금액×B×시공비율" 까지만 인정한다.
- (라) (나) 내지 (다)의 경우 전문업종별 평점은 각각의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구분한 배점을 초과할 수 없다.

(2) 전문건설사업자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

- (가) 전문건설사업자는 '가. 실적제한 이외 공사'의 계산식을 이용하며 전문업종별 실적은 전문건설사업자별 해당 전문업종 시공실적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한다. 다만, 2021.1.1.이후 전문건설사업자의 자격으로 취득한 종합공사 실적을 보유한 경우 해당 종합공사 실적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하며, 배점한도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잔여 배점을 기준으로 본문에 따라 해당 전문업종 공사실적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한다.
- (나)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참여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 제외)의 업종 실적은 참여하는 전문업종별로 시공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참여하는 전문업종 설계금액×B×시공비율" 까지만 인정한다.
- (다) (가) 내지 (나)의 경우 전문업종별 평점은 각각의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구분한 배점을 초과할 수 없다.

(3) 전문건설사업자의 시공비율은 전문업종별로 각각 산정하여 적용한다.

파.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8조의2에 따라 주력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발주한 전문공사이면서 '가. 실적제한 이외 공사'일 경우, 업종 실적은 주력업무분야 실적으로 평가한다.

3. 배치기술자 평가방법

심사요소	배점	평가요소	평점	비고
현장 대리인	12점	공사현장에 배치할 현장대리인 및 기타직위 근무 경력	계산식에 의함	

가. 배치기술자 심사는 입찰참가업체가 공사현장에 배치할 현장대리인의 시공참여 경력을 심사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업종의 경력으로 평가한다. 발주공사가 복합업종인 경우에는 주된 업종을 대상으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사특성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종된 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을 포함하여 평가할 수 있다.

나. 배치기술자 시공경력 평점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현장대리인	
$\text{현장대리인 점수} = \left(\frac{\text{동일업종 공사의 현장대리인 근무일수} \times 2}{4\text{년} \times 365} + \frac{\text{동일업종 공사의 기타직위 근무일수}}{6\text{년} \times 365} \right) \times \text{배점}$	
1) 동일업종공사 참여경력을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동일업종에 포함되는 1개 이상의 동일공종 또는 세부공사(입찰공고문에 명시)를 참여실적으로 심사할 수 있다.	
2) 기타직위의 범위는 시공(공사, 공무), 품질, 안전, 환경업무이며 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입찰공고문에 다르게 명시할 수 있다.	

다. 현장대리인 근무경력은 기성실적누계 또는 준공금액(지급자재비 포함)이 30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인정한다.

라. 현장대리인은 최초의 종합심사 심사서류 제출요구일로부터 15일 이후로서 우리 공사가 지정한 날 입찰자 소속 임·직원이어야 한다.

* 시공참여경력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관련협회에서 확인하여 발급한 경력 확인서 또는 경력증명서에 의해 심사한다.

마. 공동수급체의 경우에는 현장대리인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한다.

바. 낙찰자는 원칙적으로 배치기술자를 교체하지 못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해당공사 공사주관부서장((1)에서 (3)은 공사시행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당초 심사시 취득한 점수 이상의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기술자로 대체할 수 있다.

- (1) 배치기술자의 사망, 퇴직 등 근무관계가 종료된 경우
- (2) 배치기술자의 질병, 출산 등으로 정상적인 근무가 곤란한 경우
- (3) 배치기술자가 해당 현장에 배치된 때로부터 3년 이상이 경과되고 해당 공사의 공정률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 (4) 우리공사가 발주하는 입찰공고일이 동일한 2개 이상의 공사에 동일한 배치기술자 투입계획을 제출하여 2개 이상의 공사에 낙찰예정인 경우
- (5)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공사주관부서장이 승인한 경우

- 사. 공사주관부서의 장은 매년 2회 이상 배치기술자 투입계획 준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승인없이 배치기술자를 교체하는 등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즉시 그 위반사실을 해당업체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위반사실을 통보한 날로부터 2년 동안 우리공사가 발주하는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에서 위반사실 통보 1건당 0.5점을 감점한다. 다만, 우리공사가 발주하는 입찰공고일이 동일한 2개 이상의 공사에 동일 기술자를 투입하는 계획서를 제출하여 2개 이상의 공사에 낙찰예정인 경우로서 해당 기술자를 배치하지 못하는 공사에 대하여 계약담당부서 장이 요청한 기한까지 동등 점수 이상을 획득할 수 있는 기술자로 교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감점하지 아니한다.
- 아. 배치기술자 투입계획 위반사실 통보 건수는 해당 기술자 1인당 1건으로 산정하고, 감점대상은 승인을 받지 않고 소속 배치기술자를 교체한 공동수급체 전체 구성원(분담이행 구성원 제외)으로 하되, 감점 시 불이행한 공사에서의 시공비율 및 배치예정공사에서의 시공비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자. 배치기술자는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자격요건 및 참여경력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4. 공동수급체 구성 평가방법

심사요소	배점	등급	평점	비고
공동수급체 구성 평가	6	A. 참여비율 25%이상	6	
		B. 참여비율 20%이상, 25%미만	5.9	
		C. 참여비율 15%이상, 20%미만	5.8	
		D. 참여비율 10%이상, 15%미만	5.7	
		E. 참여비율 10%미만	5.6	

- 가. 공동수급체 구성 심사 점수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를 제외한 구성원의 참여비율 합으로 산정한다.
- 나.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업체 현황 등을 고려하여 공동수급체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다. 단독으로 입찰하는 경우 등급 E. 참여비율 10%미만의 평점을 부여한다.

[별표3-1] 사회적 책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가점)([별표1-1], [별표1-2])

1. <삭제>

2. 건설안전(가·감점) (배점 : -0.8~+0.8점)

심사요소	배점	평 점	비고														
사고사망 만인율	-0.8 ~ 0.8	$\text{점수} = 0.8 - 0.8 \times \frac{\text{해당업체가중평균사고사망만인율}}{\text{건설업가중평균사고사망만인율}}$ * 해당업체 가중평균사고사망만인율이 건설업 가중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2배 이상인 경우는 -0.8점	점수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	-0.8 ~ 0	-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에 따라 다음 계산식과 같이 점수를 산정 $\text{점수} = -0.14 \times \text{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	점수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	0.4 ~ 0.8	-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점수를 산정 <table border="1" style="margin-top: 10px;"> <thead> <tr> <th>평점</th> <th>90점 이상</th> <th>80점이상 90점미만</th> <th>70점이상 80점미만</th> <th>60점이상 70점미만</th> <th>50점이상 60점미만</th> <th>50점 미만</th> </tr> </thead> <tbody> <tr> <td>점수</td> <td>0.80</td> <td>0.72</td> <td>0.64</td> <td>0.56</td> <td>0.48</td> <td>0.40</td> </tr> </tbody> </table>	평점	90점 이상	80점이상 90점미만	70점이상 80점미만	60점이상 70점미만	50점이상 60점미만	50점 미만	점수	0.80	0.72	0.64	0.56	0.48	0.40	점수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평점	90점 이상	80점이상 90점미만	70점이상 80점미만	60점이상 70점미만	50점이상 60점미만	50점 미만											
점수	0.80	0.72	0.64	0.56	0.48	0.40											
산업안전 보건 관리비 사용 관련 위반건수	-0.4 ~ 0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관련 위반건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점수를 산정 <table border="1" style="margin-top: 10px;"> <thead> <tr> <th>처분건수</th> <th>1회</th> <th>2회이상</th> </tr> </thead> <tbody> <tr> <td>점수</td> <td>-0.2</td> <td>-0.4</td> </tr> </tbody> </table>	처분건수	1회	2회이상	점수	-0.2	-0.4	점수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처분건수	1회	2회이상															
점수	-0.2	-0.4															
산업안전 보건법령 위반 행정형벌 부과건수	-0.4 ~ 0	-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 행정형벌 부과 건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점수를 산정 <table border="1" style="margin-top: 10px;"> <thead> <tr> <th>부과건수</th> <th>2회</th> <th>3회이상</th> </tr> </thead> <tbody> <tr> <td>점수</td> <td>-0.2</td> <td>-0.4</td> </tr> </tbody> </table>	부과건수	2회	3회이상	점수	-0.2	-0.4	점수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부과건수	2회	3회이상															
점수	-0.2	-0.4															

가. 건설안전 심사는 사고사망만인율,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관련 위반 건수,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형벌 부과 건수를 심사하고, 각 항목별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점수를
산정한다. 단, 합산한 점수의 한도는 -0.8점 또는 0.8점으로 한다.

나. <삭제>

다. <삭제>

라.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산정한다.

- 마.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은 다음 계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 1)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0.5+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0.3+최근년도 2년전 사고사망만인율×0.2] (단, 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 또는 최근년도 2년전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과 산정한 연도 사고사망만인율의 평균값으로 한다.)
 - 2) 가중평균 산정시 다음에 따라 종전의 사망만인율을 활용한다.
 - 가)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 최근년도 1년전 사망만인율 및 최근년도 2년전 사망만인율(단, 최근년도 1년전 사망만인율 또는 최근년도 2년전 사망만인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과 산정한 연도 사망만인율의 평균값으로 한다)
 - 나)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 최근년도 2년전 사망만인율(단, 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 또는 최근년도 2년전 사망만인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과 산정한 연도 사망만인율 또는 사고사망만인율의 평균값으로 한다)
- 바.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는 최근 1년동안의 기간 중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확정된 건으로 산정하고, 위반건수에 따라 점수를 산정한다.
- 사.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은 최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한 평가 결과를 따르며, 해당 평점에 따라 점수를 산정한다. 단, 평점이 없는 경우 0.4점을 부여한다.
- 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관련 위반건수는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를 위반하여 목적 외 사용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용내역서를 작성·보존하지 않아 과태료처분이 확정된 건으로 산정하고, 처분건수에 따라 점수를 산정한다.
- 자.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 행정형벌 부과 건수는 최근 1년간 동일현장에서 벌금 이상의 행정형벌을 받은 건으로 산정하며, 부과 건수에 따라 점수를 산정한다.
- 차. 우리공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마. 내지 아.에 따라 산출한 입찰자의 사고사망만인율 등의 점수를 확인하고 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 카. 둘 이상의 업체가 공동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공동이행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각 구성원별 건설안전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 타.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로서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한 경우 사고사망만인율 점수는 기본점수(0.4점)을 적용하고,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관련 위반 건수,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형벌 부과 건수를 심사하고, 각 항목별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점수를 산정한다. 단, 합산한 점수의 한도는 -0.8점 또는 0.8점으로 한다.

3. 공정거래(가점) (배점 : 0.4점)

심사요소	배점	평 점		비고																															
상호협력 평가	0.4	<table border="1"> <thead> <tr> <th>등 급</th> <th>평점</th> </tr> </thead> <tbody> <tr> <td>A. 95점 이상</td> <td>0.40</td> </tr> <tr> <td>B. 90점 이상 ~ 95점 미만</td> <td>0.32</td> </tr> <tr> <td>C. 80점 이상 ~ 90점 미만</td> <td>0.24</td> </tr> <tr> <td>D. 70점 이상 ~ 80점 미만</td> <td>0.16</td> </tr> <tr> <td>E. 60점 이상 ~ 70점 미만</td> <td>0.08</td> </tr> <tr> <td>F. 60점 미만</td> <td>0</td> </tr> </tbody> </table>		등 급	평점	A. 95점 이상	0.40	B. 90점 이상 ~ 95점 미만	0.32	C. 80점 이상 ~ 90점 미만	0.24	D. 70점 이상 ~ 80점 미만	0.16	E. 60점 이상 ~ 70점 미만	0.08	F. 60점 미만	0																		
		등 급	평점																																
A. 95점 이상	0.40																																		
B. 90점 이상 ~ 95점 미만	0.32																																		
C. 80점 이상 ~ 90점 미만	0.24																																		
D. 70점 이상 ~ 80점 미만	0.16																																		
E. 60점 이상 ~ 70점 미만	0.08																																		
F. 60점 미만	0																																		
*상호협력평가점수는 입찰공고일 현재 최근년도 국토교통부 공표 자료에 의함																																			
공정거래 관련법 준수	-0.4	<table border="1"> <thead> <tr> <th>행위 유형</th> <th>조치정도</th> <th>감점</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5">입찰담합 등 공동행위 (공정거래법 제19조)</td> <td>시정명령</td> <td>-0.10</td> </tr> <tr> <td rowspan="3">과징금</td> <td>10억미만</td> <td>-0.12</td> </tr> <tr> <td>10억이상 ~30억미만</td> <td>-0.14</td> </tr> <tr> <td>30억이상</td> <td>-0.16</td> </tr> <tr> <td>법인고발</td> <td>-0.18</td> </tr> <tr> <td>법인 및 개인고발</td> <td>-0.20</td> </tr> <tr> <td rowspan="3">하도급법 위반행위</td> <td>시정명령</td> <td>-0.08</td> </tr> <tr> <td>과징금</td> <td>-0.12</td> </tr> <tr> <td>고발</td> <td>-0.16</td> </tr> <tr> <td rowspan="3">기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td> <td>시정명령</td> <td>-0.06</td> </tr> <tr> <td>과징금</td> <td>-0.10</td> </tr> <tr> <td>고발</td> <td>-0.12</td> </tr> </tbody> </table>		행위 유형	조치정도	감점	입찰담합 등 공동행위 (공정거래법 제19조)	시정명령	-0.10	과징금	10억미만	-0.12	10억이상 ~30억미만	-0.14	30억이상	-0.16	법인고발	-0.18	법인 및 개인고발	-0.20	하도급법 위반행위	시정명령	-0.08	과징금	-0.12	고발	-0.16	기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시정명령	-0.06	과징금	-0.10	고발	-0.12	
		행위 유형	조치정도	감점																															
		입찰담합 등 공동행위 (공정거래법 제19조)	시정명령	-0.10																															
			과징금	10억미만	-0.12																														
				10억이상 ~30억미만	-0.14																														
				30억이상	-0.16																														
			법인고발	-0.18																															
		법인 및 개인고발	-0.20																																
		하도급법 위반행위	시정명령	-0.08																															
			과징금	-0.12																															
			고발	-0.16																															
		기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시정명령	-0.06																															
			과징금	-0.10																															
고발	-0.12																																		

가. 공정거래 심사는 상호협력평가 심사 점수에서 공정거래 관련법 준수 심사 점수를 차감하여 산정한다.

나. 상호협력평가 점수

- 1) 상호협력평가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에 의한 상호협력평가를 말한다.
- 2) 상호협력평가 점수는 국토교통부가 매년 6월30일 공표하는 업체별 상호협력평가 등급에 따라 심사한다.
- 3) 상호협력평가점수가 없는 업체의 경우에는 F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를 부여한다.

다. 공정거래관련법 준수

- 1) 공정거래관련법이라 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이라 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이라 한다)을 말한다.
- 2) 공정거래관련법의 위반행위 시점은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일(소송 진행 중인 경우 해당소송의 확정판결일)을 기준으로 하되, 입찰공고일이 속하는 년도의 직전 2개 년도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공정거래관련법 준수 심사요소의 조치정도 중 고발[‘법인고발, ‘법인 및 개인고발’ 포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 등에 관계없이 감점하되, 무혐의 또는 무죄가 확정된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를 종합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제출하면 감점하지 아니한다.
- 3) 공정거래관련법 위반행위는 범위반 행위유형 및 조치정도에 따라 해당 점수를 감점한다.
- 4) 공정거래관련법의 위반행위 여부는 입찰참가자가 제출하는 다음 정보가 포함된 서류로 평가한다.
 - 가) 입찰공고일 기준 직전 2년간 해당 입찰참가자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3)’의 조치사실
 - 나) 입찰참가자가 ‘가) 처분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이를 입증하는 자료
 - 다) 입찰공고일 기준 직전 2년간 ‘3)’의 조치에 대한 소송의 확정판결 및 이에 대한 입증자료
- 5) 대상기간 중 하나의 의결에 다수의 조치가 있는 경우 그 중 가장 높은 점수만 감점하며, 다수의 의결이 있는 경우 각 의결의 조치 중 높은 점수의 합을 감점한다. 다만, 감점의 합은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라. 둘 이상의 업체가 공동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공동이행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각 구성원의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하되, 전체 공동수급체의 상호협력평가 점수에서 전체 공동수급체의 공정거래관련법 준수 점수를 차감하여 산정한다.

마. 공정거래 심사 점수는 해당 입찰자(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상호협력평가 점수 범위 내에서 공정거래관련법 준수 점수를 감점한다.

바.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로서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한 경우 상호협력평가 등급 점수는 기본점수(0.16점)를 적용하고, 공정거래관련법 준수 점수의 합으로 산정한다.

4. 지역경제 기여도(가점) (배점 : 0.8점)

심사요소	배점	계산식	평 점	비고
지역업체 참여비율	0.8	배점 × $\frac{\text{지역업체 참여비율}(\%)}{20\%}$	계산식에 의함	

- 가. 지역업체 기여도 평가점수는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중 대표자를 제외한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에 의하여 산정한다.
- 나. 지역업체 기여도 평가점수는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 다. 지역업체는 입찰공고일 현재 90일 이상 해당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가 소재한 업체이어야 한다.
- 라. 해당지역에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지역업체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지역경제 기여도를 평가하지 아니한다.
- 마. 평가계산식 및 가목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 고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제3항제2호에 따른 공동계약 대상사업」(이하 이 기준에서 “고시”라 한다) 제2호에 따른 사업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포함하며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심사요소	배점	계산식	평 점	비고
지역업체 참여비율 (고시 2호)	0.8	배점 × $\frac{\text{지역업체 참여비율}(\%)}{40\%}$	계산식에 의함	

[별표3-2] 사회적 책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가점)([별표1-3])

1. 건설인력 고용(가점) (배점 : 0.4점)

심사요소	배점	등 급 (고용 탄력성:표준화 점수의 해당범위)	평 점	비고
고용 탄력성	0.4	A. 고용탄력성 1등급	0.40	
		B. 고용탄력성 2등급	0.32	
		C. 고용탄력성 3등급	0.24	
		D. 고용탄력성 4등급	0.16	
		E. 고용탄력성 5등급	0.08	
		F. 고용탄력성 6등급	0	
근로기준법 준수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횟수)	-0.2	1등급	-0.04	
		2등급	-0.08	
		3등급	-0.12	
		4등급	-0.16	
		5등급	-0.20	

※ [별표2-1] 6. 가~마의 내용과 동일하게 적용

※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로서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한 경우 고용 탄력성 점수는 기본점수(0.08점)를 적용하고, 근로기준법 준수 점수의 합으로 산정한다.

2. 건설안전(가·감점) (배점 : -0.6~+0.6점)

심사요소	배점	평 점	비고														
사고사망 만인율	-0.6 ~ 0.6	$\text{점수} = 0.6 - 0.6 \times \frac{\text{해당업체가중평균사고사망만인율}}{\text{건설업가중평균사고사망만인율}}$ * 해당업체 가중평균사고사망만인율이 건설업 가중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2배 이상인 경우는 -0.6점	점수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산업재해 발생 보고 위반건수	-0.6 ~ 0	-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에 따라 다음 계산식과 같이 점수를 산정 $\text{점수} = -0.12 \times \text{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	점수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	0.3 ~ 0.6	-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점수를 산정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thead> <tr> <th>평점</th> <th>90점 이상</th> <th>80점이상 90점미만</th> <th>70점이상 80점미만</th> <th>60점이상 70점미만</th> <th>50점이상 60점미만</th> <th>50점 미만</th> </tr> </thead> <tbody> <tr> <td>점수</td> <td>0.60</td> <td>0.54</td> <td>0.48</td> <td>0.42</td> <td>0.36</td> <td>0.30</td> </tr> </tbody> </table>	평점	90점 이상	80점이상 90점미만	70점이상 80점미만	60점이상 70점미만	50점이상 60점미만	50점 미만	점수	0.60	0.54	0.48	0.42	0.36	0.30	점수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평점	90점 이상	80점이상 90점미만	70점이상 80점미만	60점이상 70점미만	50점이상 60점미만	50점 미만											
점수	0.60	0.54	0.48	0.42	0.36	0.30											

산업안전 보건 관리비 사용 관련 위반건수	-0.3 ~ 0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관련 위반건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점수를 산정	점수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table border="1"> <tr> <td>처분건수</td> <td>1회</td> <td>2회이상</td> </tr> <tr> <td>점수</td> <td>-0.15</td> <td>-0.30</td> </tr> </table>		처분건수	1회	2회이상
처분건수	1회	2회이상				
점수	-0.15	-0.30				
산업안전 보건법령 위반 행정형벌 부과건수	-0.3 ~ 0	-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 행정형벌 부과 건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점수를 산정	점수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table border="1"> <tr> <td>부과건수</td> <td>2회</td> <td>3회이상</td> </tr> <tr> <td>점수</td> <td>-0.15</td> <td>-0.30</td> </tr> </table>		부과건수	2회	3회이상
부과건수	2회	3회이상				
점수	-0.15	-0.30				

- ※ [별표3-1] 2. 가~카의 내용과 동일하게 적용. 단,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 평점이 없는 경우 0.3점을 부여한다.
- ※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로서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한 경우 사고사망만인율 점수는 기본점수(0.3점)를 적용하고,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 건수,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관련 위반 건수,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형벌 부과 건수를 심사하고, 각 항목별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점수를 산정한다. 단, 합산한 점수의 한도는 -0.6점 또는 0.6점으로 한다.

3. 공정거래(가점) (배점 : 0.4점)

심사요소	배점	평 점		비고																																	
상호협력 평가	0.4	<table border="1"> <thead> <tr> <th>등 급</th> <th>평점</th> </tr> </thead> <tbody> <tr> <td>A. 95점 이상</td> <td>0.40</td> </tr> <tr> <td>B. 90점 이상 ~ 95점 미만</td> <td>0.32</td> </tr> <tr> <td>C. 80점 이상 ~ 90점 미만</td> <td>0.24</td> </tr> <tr> <td>D. 70점 이상 ~ 80점 미만</td> <td>0.16</td> </tr> <tr> <td>E. 60점 이상 ~ 70점 미만</td> <td>0.08</td> </tr> <tr> <td>F. 60점 미만</td> <td>0.00</td> </tr> </tbody> </table>		등 급	평점	A. 95점 이상	0.40	B. 90점 이상 ~ 95점 미만	0.32	C. 80점 이상 ~ 90점 미만	0.24	D. 70점 이상 ~ 80점 미만	0.16	E. 60점 이상 ~ 70점 미만	0.08	F. 60점 미만	0.00																				
		등 급	평점																																		
A. 95점 이상	0.40																																				
B. 90점 이상 ~ 95점 미만	0.32																																				
C. 80점 이상 ~ 90점 미만	0.24																																				
D. 70점 이상 ~ 80점 미만	0.16																																				
E. 60점 이상 ~ 70점 미만	0.08																																				
F. 60점 미만	0.00																																				
*상호협력평가점수는 입찰공고일 현재 최근년도 국토교통부 공표 자료에 의함																																					
공정거래 관련법 준수	-0.4	<table border="1"> <thead> <tr> <th>행위 유형</th> <th>조치정도</th> <th>감점</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4">입찰담합 등 공동행위 (공정거래법 제19조)</td> <td>시정명령</td> <td>-0.10</td> </tr> <tr> <td rowspan="3">과징금</td> <td>10억미만</td> <td>-0.12</td> </tr> <tr> <td>10억이상 ~30억미만</td> <td>-0.14</td> </tr> <tr> <td>30억이상</td> <td>-0.16</td> </tr> <tr> <td colspan="2">법인고발</td> <td>-0.18</td> </tr> <tr> <td colspan="2">법인 및 개인고발</td> <td>-0.20</td> </tr> <tr> <td rowspan="3">하도급법 위반행위</td> <td>시정명령</td> <td>-0.08</td> </tr> <tr> <td>과징금</td> <td>-0.12</td> </tr> <tr> <td>고발</td> <td>-0.16</td> </tr> <tr> <td rowspan="3">기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td> <td>시정명령</td> <td>-0.06</td> </tr> <tr> <td>과징금</td> <td>-0.10</td> </tr> <tr> <td>고발</td> <td>-0.12</td> </tr> </tbody> </table>		행위 유형	조치정도	감점	입찰담합 등 공동행위 (공정거래법 제19조)	시정명령	-0.10	과징금	10억미만	-0.12	10억이상 ~30억미만	-0.14	30억이상	-0.16	법인고발		-0.18	법인 및 개인고발		-0.20	하도급법 위반행위	시정명령	-0.08	과징금	-0.12	고발	-0.16	기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시정명령	-0.06	과징금	-0.10	고발	-0.12	
		행위 유형	조치정도	감점																																	
		입찰담합 등 공동행위 (공정거래법 제19조)	시정명령	-0.10																																	
			과징금	10억미만	-0.12																																
				10억이상 ~30억미만	-0.14																																
				30억이상	-0.16																																
		법인고발		-0.18																																	
		법인 및 개인고발		-0.20																																	
		하도급법 위반행위	시정명령	-0.08																																	
			과징금	-0.12																																	
고발	-0.16																																				
기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시정명령	-0.06																																			
	과징금	-0.10																																			
	고발	-0.12																																			

※ [별표3-1] 3. 가~마의 내용과 동일하게 적용

※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로서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한 경우 상호 협력평가 등급 점수는 기본점수(0.16점)을 적용하고, 공정거래관련법 준수 점수의 합으로 산정한다.

4. 지역경제 기여도(가점) (배점 : 0.6점)

심사요소	배점	계산식	평 점	비고
지역업체 참여비율	0.6	배점 × $\frac{\text{지역업체 참여비율}(\%)}{20\% \times A}$	계산식에 의함	

가. [별표3-1] 4. 나~라의 내용과 동일하게 적용(다만, 지역업체 참여비율 산정시 공동수급체 대표자도 포함하여 산정한다.)하며, A값은 조정계수로서 지역업체 현황과 공사규모 및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0.5~2사이에서 결정하여 입찰 공고문에 명시하며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경우 1을 적용한다.

나. 평가계산식 및 가목에도 불구하고 고시 제2호에 따른 사업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포함하며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심사요소	배점	계산식	평 점	비고
지역업체 참여비율 (고시 2호)	0.6	배점 × $\frac{\text{지역업체 참여비율}(\%)}{40\%}$	계산식에 의함	

[별표4] 입찰금액 평가 및 가격 산출의 적정성 심사방법

1. 입찰금액 평가

심사요소	배 점	평 점	비 고
입찰금액	50점 또는 60점	계산식에 의함	

가. 입찰금액 심사는 예정가격과 제6조의 균형가격을 통해 입찰금액에 따른 가격 점수를 다음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다.

1) 투찰금액이 균형가격 미만일 경우 (A계수 : 0.5)

$$\text{입찰금액 심사점수} = \sqrt{1 - A \left(\frac{\text{당해투찰금액} - \text{균형가격}}{\text{예정가격} - \text{균형가격}} \right)^2} \times \text{배점}$$

2) 투찰금액이 균형가격일 경우

입찰금액 심사점수 = 배점한도

3) 투찰금액이 균형가격 초과일 경우 (B계수 : 1)

$$\text{입찰금액 심사점수} = \sqrt{1 - B \left(\frac{\text{당해투찰금액} - \text{균형가격}}{\text{예정가격} - \text{균형가격}} \right)^2} \times \text{배점}$$

나. 계산식의 제곱근내부 계산 값이 음수인 경우 입찰금액 심사점수는 0으로 한다.

2. 가격 산출의 적정성 평가

가. 가격 산출의 적정성 평가는 세부공종의 단가, 하도급계획, 물량심사, 시공계획 심사 등을 통해 적정한 공사비 산정과 공정한 하도급거래를 보장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나. 단가 심사(감점)

심사요소	배점	계산식	평점	비고
단가	-10점 (간이형공사 : -4점)	배점 × (1 - $\frac{1}{100}$ (단가점수))	계산식에 의함	

※ “단가”란 직접공사비 내 심사대상이 되는 세부공종별로 계상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각 단가의 합계액으로 한다.

- 1) 단가점수의 배점한도는 100점으로 한다.
- 2) 단가점수는 세부공종별 가중치와 세부공종별 단가점수의 곱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산정결과는 소수점 아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3) 세부공종별 가중치는 설계내역서상 세부공종의 합계금액에 대한 각 세부공종 금액으로 산정하며, 전체 가중치의 합계는 1로 한다. 세부공종별 가중치는 소수점 아래 일곱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하며, 가중치의 합계가 1이 되지 않을 경우 세부공종금액이 큰 순서대로 보정한다. 세부공종금액의 크기가 같을 경우 설계내역서상의 세부공종 순서대로 보정한다.

- 4) 세부공종별 단가점수는 세부공종 입찰단가가 세부공종 기준단가의 ±17% 이내인 경우 100점으로 평가(이하 “적정단가 기준”이라 한다.)하고, 그 외에는 0점으로 평가한다. 다만, 우리공사가 작성한 산출내역서의 직접공사비에서 표준시장단가, 음(-)의 공종, PS 금액 등의 고정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20% 이상인 공사에 대하여는 적정단가 기준을 다음의 범위 내에서 입찰공고문에 설정하여 심사한다.

고정비용 비중	적정단가 기준
20% 이상~25% 미만	세부공종 기준단가의 <u>±17% 이내</u> ~ <u>±18% 이내</u>
25% 이상~30% 미만	세부공종 기준단가의 <u>±17% 이내</u> ~ <u>±19% 이내</u>
30% 이상~40% 미만	세부공종 기준단가의 <u>±17% 이내</u> ~ <u>±20% 이내</u>
40% 이상	세부공종 기준단가의 <u>±17% 이내</u> ~ <u>±21% 이내</u>

- 5) 세부공종 기준단가는 설계내역서상 세부공종 단가에 예정가격을 설계금액으로 나눈 비율(소숫점 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70(간이형 공사는 90)과 제2조 11호의 균형단가에 100분의 30(간이형 공사는 10)을 곱한 금액의 합산으로 산정하며, 산정 시 원단위 미만은 합산 후 절사한다.
- 6) 위의 '4)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 해당 세부공종의 단가점수를 0점으로 평가한다.
- 세부공종 중 품질시험비, 환경관리비가 세부공종 설계금액 대비 80% 미만일 경우
 - 우리공사에서 협의율을 고시한 신기술(특허) 적용 세부공종을 해당 협의율 미만으로 입찰한 경우
- 7) 위의 '4)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각각의 비목에 대하여 단가점수 배점의 10%씩을 감점한다.
- 전체 입찰내역 총액(표준시장단가, PS단가는 합계시 제외)에 대하여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설계금액기준 비목별 구성비율과 입찰내역금액 기준 비목별 구성비율을 대비하여 ±20%를 초과하는 경우
- 8) <삭 제>
- 9) 단가심사는 직접공사비의 모든 세부공종을 대상으로 심사하되 표준시장단가와 단가 등 지령항목(PS 항목)은 제외한다.
- 10) 위의 '4)에도 불구하고 간이형 공사의 경우에는 세부공종 단가점수의 평가에 있어, 세부공종 기준단가의 ±12%이내인 경우 100점으로 평가한다. 다만, '4)에 따른 고정비용의 비중이 20% 이상인 공사는 다음과 같이 적정단가 기준을 설정하여 심사한다.

고정비용 비중	적정단가 기준
20% 이상~25% 미만	세부공종 기준단가의 <u>±13% 이내</u>
25% 이상~30% 미만	세부공종 기준단가의 <u>±14% 이내</u>
30% 이상	세부공종 기준단가의 <u>±15% 이내</u>

다. 하도급계획 심사(감점)

심사요소	배점	평 점	비고
하도급계획	-10점 (간이형공사 : -2점)	계산식에 의함	
하도급계획 불이행		불이행 1건당 1.0점 (간이형공사 : 0.5점) 감점	

- 1)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한 하도급계약건별 하도급금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심사하며,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전체 공사를 직접시공 하는 것을 간주한다.
- 2)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로서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한 경우와 전문공사에 종합건설사업자가 참여한 경우 해당 사업자가 직접 시공하는 부분에는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다.
- 3) 하도급계획심사점수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다.

$$\text{◎하도급계획심사점수} = \text{배점} \times \left\{ 1 - \frac{1}{100} (\text{하도급점수}) \right\}$$

- 4) 하도급점수의 배점한도는 100점으로 한다.
- 5) 하도급점수는 하도급계약별 가중치와 하도급계약별 하도급점수의 곱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소수점 아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6) 하도급계약별 가중치는 설계내역서상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한 전체부분의 합계금액(직·간접 노무비, 재료비, 경비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 이하 “내역서상 금액”)에 대한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한 각 하도급계약에 대한 내역서상의 금액으로 산정하며, 전체 가중치의 합계는 1로 한다. 하도급계약별 가중치는 소수점 아래 일곱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하며, 가중치의 합계가 1이 되지 않을 경우 하도급계약에 대한 설계내역서상 금액이 가장 큰 하도급계약건에서 보정한다. 하도급계약에 대한 설계내역서상 금액의 크기가 같을 경우 하도급계획서상의 순서대로 보정한다.
- 7) 하도급계약별 하도급점수는 하도급계약별로 하도급업체에게 지급할 금액이 설계내역서상 금액의 100분의 64이상으로서, 하도급할 부분에 대한 입찰금액(직·간접 노무비, 재료비, 경비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 지급자재 및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은 제외)의 100분의 82이상인 경우 100점으로 평가하고, 그 외에는 0점으로 평가한다.
- 8) 공사시행부서의 장은 낙찰자가 향후 시공 과정에서 직접시공을 하도급으로 전환하려 하거나, 하도급계획을 제출하였으나 직접시공 하려고 하는 경우 변경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해당 공사에서 1회 이상 변경한 경우에는 누적금액)이 다음의 구분에 따른 범위 내인 경우에 한하여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직접시공을 하도급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이 '7)'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

- (가) 직접시공을 하도급으로 전환하려는 경우 : 낙찰금액의 10%
- (나) 하도급계획을 제출하였으나 직접시공 하려는 경우 : 낙찰금액의 20%
- 9) 공사주관부서의 장은 매년 2회 이상 낙찰자의 하도급계획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하도급계획을 불이행을 확인한 경우에는 즉시 그 위반사실을 해당업체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위반사실을 통보한 날로부터 2년 동안 우리공사가 발주하는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에서 위반사실 통보 1건당 1.0점(간이형공사는 0.5점)을 감점한다.
- 10) '9)에도 불구하고 하도급업체의 파산, 해산, 부도 및 하도급업체의 귀책사유에 따른 계약해제·해지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하도급계약이 이행불능에 이른 때에는 감점하지 아니한다.
- 11) 감점대상은 하도급계획을 불이행한 공동수급체 전체 구성원(분담이행 구성원 제외)으로 하되, 감점 시 위반한 공사에서의 참여비율 및 발주예정공사에서의 시공비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12) 1) ~ 7)에도 불구하고 간이형 공사의 경우 전체 하도급 계약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적정성을 심사하며, 하도급업체에 지급할 금액의 합계가 발주기관 내역서상 금액의 100분의 64이상으로서, 하도급할 부분에 대한 입찰금액(직·간접 노무비, 재료비, 경비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 지급자재 및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은 제외)의 100분의 82이상인 경우 100점으로 평가하고, 그 외는 0점으로 평가한다.

라. 물량 심사

심사요소	배점	계산식	평 점	비고
물량	-10점	배점 × {1 - $\frac{1}{100}$ (물량점수)}	계산식에 의함	

- 1) 물량점수 배점한도는 100점으로 한다.
- 2) 물량점수는 세부공종별 가중치와 세부공종별 물량점수의 곱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소수점은 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가) 세부공종별 가중치는 설계내역서 상 물량내역작성 허용공종 전체 세부공종의 합계금액에 대한 각 물량내역작성 허용 세부공종 금액으로 산정하며, 전체 가중치의 합계는 1로 한다. 세부공종별 가중치는 소수점 아래 일곱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하며, 가중치의 합계가 1이 되지 않을 경우 설계내역서상 세부공종금액이 큰 순서대로 보정한다. 세부공종금액의 크기가 같을 경우 설계내역서상의 순서대로 보정한다.
- 나) 세부공종별 물량점수는 세부공종 입찰물량이 최종물량 대비 0 ~ +2%이내인 경우 100점으로 평가하고, 그 외는 0점으로 평가한다. 또한, 세부공종별 가중치가 0이 되는 세부공종은 설계물량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설계물량과 다를 경우 0점으로 평가한다.

다)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세부공종에 대해서는 0점으로 평가한다.

- ① 총계방식으로 작성("1식단가" 또는 "복합단가"라 한다)한 물량내역서의 단가구성 내용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 ② 물량내역서의 공종별 목적물 물량을 다른 공종에 배분하여 산출내역서를 작성한 경우
- ③ 물량내역 산출사유서(첨부서류 포함)가 없는 세부공종
- ④ 물량심사 대상 세부공종에서 삭제되거나 "0"이 되어야 할 세부공종의 물량을 "0"보다 크게 산출한 경우
- ⑤ 설계서(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의 변경에 해당하는 물량내역 산출

마. 시공계획 심사

심사요소	배점	계산식	평 점	비고
시공계획	-10점	배점 × {1 - $\frac{1}{100}$ (시공계획점수)}	계산식에 의함	

- 1) 시공계획점수 배점한도는 100점으로 한다.
- 2) 시공계획점수 평가내용 및 배점은 다음과 같다.

세부항목	평가내용	배점	평가방법
1. 공사관리의 적정성	- 공정계획수립의 적정성 - 자재, 인력, 장비관리 및 투입의 적정성 - 공사수행조직 구성의 적정성 - 공정지연 발생요인 및 대처방안	25	적 정 (100%) 미 흡 (50%) 부적정 (0%)
2. 품질관리의 적정성	- 하자발생 방지를 위한 품질관리계획의 적정성 - 품질시험계획의 적정성	25	적 정 (100%) 미 흡 (50%) 부적정 (0%)
3. 안전관리의 적정성	- 안전관리(안전관리 조직운영 계획 포함)·점검계획 - 중점 안전관리사항 및 안전사고 발생 방지 계획 등	25	적 정 (100%) 미 흡 (50%) 부적정 (0%)
4. 환경관리의 적정성	- 환경관리계획의 적정성 - 소음·진동·분진 방지대책의 적정성 - 폐기물 처리 및 고위험물질관리 계획의 적정성	25	적 정 (100%) 미 흡 (50%) 부적정 (0%)
합 계		100	

- 3)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 4) 공사주관부서의 장은 매년 2회 이상 낙찰자의 시공계획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시공계획을 불이행한 경우에는 즉시 그 위반사실을 해당업체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위반사실을 통보한 날로부터 2년 동안 우리공사가 발주하는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의 시공계획심사 점수에서 위반사실 통보 1건당 0.1점(간이형 공사는 0.05점)을 감점한다.
- 5) 공사주관부서의 장은 점검대상 항목, 점검절차 및 감점기준을 정하되 정량적으로 평가가 가능한 부분에 한한다.
- 6) 감점대상은 시공계획을 불이행한 공동수급체 전체 구성원(분담이행 구성원 제외)으로 하되, 감점 시 위반한 공사에서의 시공비율 및 발주예정공사에서의 시공비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5-1]제출서류 목록표([별표1-1], [별표1-2])

구분		제출서류		발행기관	비고
총괄		종합심사 신청 및 정보수집활용 동의서		신청자	별지 제1호 서식
		종합심사 자기평가기술서		신청자	별지 제2-1호 서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		조달청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증명서 ※경쟁입찰참가등록증 사용인감 사용시 생략		신청자	
		공동수급체 현황표		신청자	별지 제8호 서식
공사 수행 능력	시공실적	동일공사(공법) 실적명세서		관련협회, 발주기관	별지 제3호 서식
		동일공사(공법) 시공실적증명서			별지 제4호 서식
	시공인력	경력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관련협회	별지 제9호 서식
		건설기술자 시공참여공사 실적증명서 및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관련협회	
	매출액비중	최근 10년간 건설공사 국내동일공종그룹 실적확인서		관련협회	
	배치기술자	배치기술자 배치계획서		신청자	
		배치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관련협회	별지 제10호 서식
		배치기술자 시공참여공사 실적증명서 및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관련협회	
		배치기술자 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가입(택1) 확인자료		신청자, 관련기관	
	건설인력 고용	고용탄력성 점수 확인서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시스템 홈페이지 건설인 력 고용지수 화면 출력물
임금체불사업주 명단 공개횟수 확인서					
입찰 금액	하도급계획	하도급계획서 관련 서류		신청자	별지 제5호 서식
	물량	물량수정 관련 서류	※물량·시공계획 심사대상자 제출	신청자	별지 제6호 서식
	시공계획	시공계획서 관련 서류			별지 제7호 서식
사회적 책임	건설안전	사고사망만인율 확인서		한국산업안전 보건공단	
		산업재해발생보고의무 위반확인서			
	공정거래	공정거래관련법 준수관련 처분확인서		공정거래 위원회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실적평가점수 확인서		관련협회	

주1) 상기 목록 외 종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하여 순위별 목록표를 작성.첨부

주2) 자기평가기술서는 각 심사항목별로 점수와 산출근거를 명시

주3) 공동수급체의 경우 모든 서류는 구성원별이 아닌 심사항목 순으로 편철

[별표5-2]제출서류 목록표([별표1-3])

구분		제출서류	발행기관	비고
총괄		종합심사 신청 및 정보수집활용 동의서	신청자	별지 제1호 서식
		간이형 종합심사 자기평가기술서	신청자	별지 제2-2호 서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	조달청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증명서 ※경쟁입찰참가등록증 사용인감 사용시 생략	신청자	
		공동수급체 현황표	신청자	별지 제8호 서식
공사 수행 능력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표	신용정보업자	
	시공실적	해당업종 최근 5년간 공사실적 자료	관련협회	실적경쟁 이외
		공종별 동일공사 실적명세서 동일공사 준공실적 증명서	발주기관, 관련협회	실적제한
	배치기술자	배치기술자 배치계획서	신청자	
		경력사항 확인서	관련협회	별지 제10호 서식
		배치기술자 시공참여공사 실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관련협회	
	배치기술자 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가입(택1) 확인자료	신청자, 관련기관		
입찰 금액	하도급계획	하도급계획서 관련 서류	신청자	별지 제5호 서식 (입찰이후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사회적 책임	건설인력 고용	고용탄력성 점수 확인서	고용노동부	고용보험시스템 홈 페이지 건설인력 고용지수 화면 출 력물
		임금체불사업주 명단 공개횟수 확인서		
	건설안전	사고사망만인율 확인서	한국산업안전 보건공단	
		산업재해발생보고의무 위반확인서		
	공정거래	공정거래관련법 준수관련 처분확인서	공정거래 위원회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실적평가점수 확인서	관련협회	

주1) 상기 목록 외 종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하여 순위별 목록표를 작성.첨부

주2) 자기평가기술서는 각 심사항목별로 점수와 산출근거를 명시

주3) 공동수급체의 경우 모든 서류는 구성원별이 아닌 심사항목 순으로 편철

[별지 제1호 서식]

종합심사 신청 및 정보수집활용 동의서

- 공사공고번호 :
- 공 사 명 :
- 입찰일시 : 20

위 건 공사입찰과 관련하여 종합심사를 신청하오니 우리회사(공동수급체구성원 포함)에서 귀 공사에 제출한 자료에 의거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심사를 위한 붙임자료에 포함된 법인 및 개인의 정보수집과 활용에 동의합니다. 만일 제출한 서류(공동수급체구성원의 제출서류포함)가 부정한 방법(변조·위조·허위 등)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 될 경우에는 본 건 공사의 입찰참가자격에서의 제외는 물론 기타 귀공사의 정당한 조치에 응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제출자(공동수급체 대표자)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 첨 부: 1. 종합심사 자기평가기술서 1부
 2. 제출서류목록표상 제출서류 각 1부

한국도로공사 사장 귀 하

..... (절취선) (인).....
 접 수 증

- 1. 공사공고번호 :
- 2. 공 사 명 :
- 3. 제 출 자 :

위 건 공사의 심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한국도로공사 계약팀장 (인)

[별지 제2-1호 서식]([별표1-1], [별표1-2])
종합심사 자기평가기술서

1. 대상 공사

공 고 번 호		입 찰 일 시	
공 사 명			

2. 종합 평 점(입찰금액 제외)

구 분	공사수행능력	사회적책임	계약신뢰도(감점)	합 계
자기평가평점				

3. 심사분야별 평점

가. 공사수행능력

시공실적 (또는 시공인력)	시공실적	배치기술자	시공평가결과	공동수급체 구성	건설인력 고용		합 계
					고용 탄력성	근로기준법 준수	

나. 사회적 책임

건설안전	공정거래		지역경제 기여도	합 계
	상호협력 평가	공정거래 관련법 준수		

다. 계약신뢰도

배치기술자 투입계획 위반	하도급계획 위반	시공계획 위반	합 계

4. 공동수급체 구성현황

구 분	구성원 I(대표자)	구 성 원 II	구 성 원 III
① 회 사 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 표 자	(인)	(인)	(인)
④ 지역업체 여부	해당없음, ○, ×	해당없음, ○, ×	해당없음, ○, ×
⑤ 중소기업 여부	해당없음, ○, ×	해당없음, ○, ×	해당없음, ○, ×
⑥ 참 여 비 율			
⑦ 시 공 비 율			
⑧ 이 행 방 법			
⑨ 시공능력평가액			
⑩ 보유면허 및 번호			
⑪ 전 화 번 호			
⑫ F A X 번 호			
⑬ 주 소			
⑭ 작 성 자			

주) 공동도급의 이행내용 및 이행방법은 구성원중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변경할 수 없음.

5. 공사수행능력

1) 시공실적

구 분		구성원 I	구성원 II	구성원 III
동일공사 시공실적	동일공사①	㉑3년미만		
		㉒3년 이상 5년 미만		
		㉓5년이상		
		소계 (㉑ + ㉒*0.9 + ㉓*0.8)		
		계①		
	동일공사②	㉑3년미만		
		㉒3년 이상 5년 미만		
		㉓5년이상		
		소계 (㉑ + ㉒*0.9 + ㉓*0.8)		
		계②		
	동일공사③	㉑3년미만		
		㉒3년 이상 5년 미만		
		㉓5년이상		
		소계 (㉑ + ㉒*0.9 + ㉓*0.8)		
		계③		
계	계①+계②+계③ (보합비율 적용)			

1-1) 시공인력

구 분			기술자 등급계수	경력 계수	관리능력 계수	점수	소계	계	등급	평점
시공인력	동일 공사 ①	구성원 I	홍길동							
		구성원 II	홍길동							
		구성원 III	홍길동							
	동일 공사 ②	구성원 I	홍길동							
		구성원 II	홍길동							
		구성원 III	홍길동							
	동일 공사 ③	구성원 I	홍길동							
		구성원 II	홍길동							
		구성원 III	홍길동							
	계 (보합비율적용)									

※ 상기의 '1) 시공실적심사'를 제출한 경우 작성 불필요

2) 매출액 비중

구 분		구성원 I (시공비율%)	구성원 II (시공비율%)	구성원 III (시공비율%)	
매출액 비중	최근 10년간 동일공종그룹 실적 총액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소계① (㉠ + ㉡*0.9 + ㉢*0.8)			
	최근 10년간 해당업종 실적 총액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소계② (㉠ + ㉡*0.9 + ㉢*0.8)			
	구성원별 등급 및 평점 (배점×①/②)				
	자기평가점수 (시공비율반영)				

3) 배치기술자

구 분			합 계					
현장대리인 시공참여 경력	배점	고속도로 현장대리인 근무일수						
		점 수						
	배점	고속도로 현장 기타직위 근무일수						
		점 수						
	소 계							
구 분			시공					
			시공①	시공②	시공③	평균	품질	안전
시공책임자 시공참여경력	배점	동일공종그룹(시공) 또는 동일업종(품질, 안전) 근무일수						
		점 수						
	소 계							
총 계								

4) 공공공사 시공평가

구 분		공 사 명	공사금액 (a)	공사별 참여지분율(b)	지분금액 (a×b)	시공평가 점수(c)	계 (a×b×c)	
시공평가 점수	구성원 I (시공 비율%)							
		소 계						
	구성원 II (시공 비율%)							
		소 계						
	구성원 III (시공 비율%)							
		소 계						
	자기평가 점수 (<u>계산식</u> 에 따른 시공비율 반영)							

5) 공동수급체 구성

구 분	대표사	구성원 I	구성원 II	구성원 III	비 고
공동수급체	%	%	%	%	참여비율
자기평가 점수					

6) 건설인력 고용

구 분		구성원 I (시공비율%)	구성원 II (시공비율%)	구성원 III (시공비율%)	소계
고용탄력성	고용탄력성				
	점 수				
근로기준법 준수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횟수				
	점 수				
자기평가 점수 (시공비율 반영)					

6. 사회적 책임

1) 건설안전

구 분		구성원 I (시공비율%)	구성원 II (시공비율%)	구성원 III (시공비율%)	소계
사고사망만인율	사고사망만인율				
	점 수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				
	점 수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				
	점 수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사용 관련 위반건수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사용 관련 위반건수				
	점 수				
산업안전 보건법령 위반 행정형벌 부과건수	산업안전 보건법령 위반 행정형벌 부과건수				
	점 수				
자기평가 점수 (시공비율 반영)					

2) 공정거래

구 분		구성원 I	구성원 II	구성원 III	소계
상호협력평가	상호협력평가 점수				
	점 수				
공정거래 관련법 준수	행위유형				
	점 수				
자기평가 점수 (시공비율 반영)					

3) 지역경제기여도

구 분	대표사	구성원 I	구성원 II	구성원 III	비 고
공동수급체	%	%	%	%	참여비율
지역업체 여부 (○ 또는 ×)					
점 수					

[별지 제2-2호 서식]([별표1-3])

간이형 종합심사 자기평가기술서

1. 대상공사

공 고 번 호		입 찰 일 시	
공 사 명			

2. 종합 평 점(입찰금액 제외)

구 분	공사수행능력	사회적책임	계약신뢰도(감점)	합 계
자기평가평점				

3. 심사분야별 평점

가. 공사수행능력

경영상태	시공실적	배치기술자	공동수급체 구성	합 계

나. 사회적 책임

건설인력 고용		건설안전	공정거래		지역경제 기여도	합 계
고용 탄력성	근로기준법 준수		상호협력 평가	공정거래 관련법 준수		

다. 계약신뢰도

배치기술자 투입계획 위반	하도급계획 위반	시공계획 위반	합 계

4. 공동수급체 구성현황

구 분	구성원 I(대표자)	구 성 원 II	구 성 원 III
① 회 사 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 표 자	(인)	(인)	(인)
④ 지역업체 여부	해당없음, ○, ×	해당없음, ○, ×	해당없음, ○, ×
⑤ 중소기업 여부	해당없음, ○, ×	해당없음, ○, ×	해당없음, ○, ×
⑥ 참 여 비 율			
⑦ 시 공 비 율			
⑧ 이 행 방 법			
⑨ 시공능력평가액			
⑩ 보유면허 및 번호			
⑪ 전 화 번 호			
⑫ F A X 번 호			
⑬ 주 소			
⑭ 작 성 자			

주) 공동도급의 이행내용 및 이행방법은 구성원중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변경할 수 없음.

5. 공사수행능력

1) 경영상태

구 분		구성원 I (시공비율%)	구성원 II (시공비율%)	구성원 III (시공비율%)
경영상태 평점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평 점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평 점		
		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자기평가점수 (시공비율반영)				

2) 시공실적

가. 실적제한 이외 공사

구 분		구성원 I (시공비율%)	구성원 II (시공비율%)	구성원 III (시공비율%)
실적금액	최근 5년간 당해업종 공사실적액			
	계(시공비율반영)			
	자기평가점수			

나. 실적제한 공사

구 분		구성원 I	구성원 II	구성원 III
동일공사 시공실적	동일공사①	㉑3년미만		
		㉒3년 이상 5년 미만		
		㉓5년이상		
		소계 (㉑ + ㉒*0.9 + ㉓*0.8)		
		계①		
	동일공사②	㉑3년미만		
		㉒3년 이상 5년 미만		
		㉓5년이상		
		소계 (㉑ + ㉒*0.9 + ㉓*0.8)		
		계②		
	동일공사③	㉑3년미만		
		㉒3년 이상 5년 미만		
		㉓5년이상		
		소계 (㉑ + ㉒*0.9 + ㉓*0.8)		
		계③		
	계	계①+계②+계③ (보합비율 적용)		

3) 배치기술자

구 분		합 계
현장대리인 시공참여 경력	배점	동일업종 현장대리인 근무일수
		점 수
	배점	동일업종 현장 기타직위 근무일수
		점 수
	계	

4) 공동수급체 구성

구 분	대표사	구성원 I	구성원 II	구성원 III	비 고
공동수급체	%	%	%	%	참여비율
자기평가 점수					

6. 사회적 책임

1) 건설인력 고용

구 분		구성원 I (시공비율%)	구성원 II (시공비율%)	구성원 III (시공비율%)	소계
고용탄력성	고용탄력성				
	점 수				
근로기준법 준수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횟수				
	점 수				
자기평가 점수 (시공비율 반영)					

2) 건설안전

구 분		구성원 I (시공비율%)	구성원 II (시공비율%)	구성원 III (시공비율%)	소계
사고사망만인율	사고사망만인율				
	점 수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				
	점 수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				
	점 수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사용 관련 위반건수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사용 관련 위반건수				
	점 수				
산업안전 보건법령 위반 행정형벌 부과건수	산업안전 보건법령 위반 행정형벌 부과건수				
	점 수				
자기평가 점수 (시공비율 반영)					

3) 공정거래

구 분		구성원 I	구성원 II	구성원 III	소계
상호협력평가	상호협력평가 점수				
	점 수				
공정거래 관련법 준수	행위유형				
	점 수				
자기평가 점수 (시공비율 반영)					

4) 지역경제 기여도

구 분	대표사	구성원 I	구성원 II	구성원 III	비 고
공동수급체	%	%	%	%	참여비율
지역업체 여부 (○ 또는 ×)					
점 수					

[별지 제3호 서식]

동일공사(공법) 실적 명세서

○ 공사명 : '입찰에 참가한 공사명 기재'

구 분		구조물 명칭	준공 일자	규모	조정계수	규모 (조정계수 반영)	비고
동일공사 (공법) ①	구성원 I	'동일공사(공법)이 포함된 실적의 계약건명 기재'					
	구성원 II						
	구성원 III						
소 계							
동일공사 (공법) ②	구성원 I						
	구성원 II						
	구성원 III						
소 계							
동일공사 (공법) ③	구성원 I						
	구성원 II						
	구성원 III						
소 계							
<p style="text-align: center;">우리의 공사실적은 상기와 같으며 누락 또는 착오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귀공사의 판단에 따른 정당한 조치에 응할 것입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p> <p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제 출 자(공동수급체 대표사) 주 소 : </p> <p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성 명 : </p> <p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대 표 자 : (인) </p>							

[별지 제4호 서식]

동일공사(공법) 시공실적 증명서

I. 일반적인 사항								
1)공사명						2)발주기관		
1-1)공사위치						(발주자)		
3)시공사 (대표)	3-1)회사명		3-2)면허번호		3-3)대표자			
	3-4)영업소재지				3-5)전화번호			
4)계약 및 준공 (장기계속 또는 계속비공사는 총공사 기준 작성)	4) 총공사기준				4) 년차(금차) 공사기준			
	4-1) 계약일자		4-4)공사금액 (준공+관급)		4-1) 계약일자		4-4)공사금액 (준공+관급)	
	4-2) 착공일자		4-5) 준공금액		4-2) 착공일자		4-5) 준공금액	
	4-3) 준공일자		4-6) 관급금액		4-3) 준공일자		4-6) 관급금액	
5)공사성질	신규공사(), 확장공사(), 개보수공사() ※해당란에 ○표							
6)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단독도급() ※해당란에 ○표							
7)실적의 종류	개념설계(), 기본설계(), 실시설계(), 시공(), 감리(), 품질,공사관리(), 시운전(), 기자재제작설치(), 기자재설치(), 기타() ※해당란에 ○표							
II.시공실적의 내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작성						
구분	시공사(대표)	시공사		시공사		시공사		
1) 회사명								
2) 대표	(인)	(인)		(인)		(인)		
3) 공사 금액	지분율: %	지분율: %		지분율: %		지분율: %		
3-1) 준공금액								
3-2)관급 금액								
4) 전체공사 시공규모 : 구체적인 시공물량표시								
5) 시공회사별 실적공중 또는 사전심사공중 시공규모, 방법(공법)								
6) 시공회사별 실적 공중 또는 사전심사 공중의 금액								
6-1)시공회사별 실적 공중 또는 사전심사 공중의 준공금액								

6-2)시공회사별 실적 공종 또는 사전심사 공종의 관급금액			
7) 하도급의 내용	*하도급자별로 구분작성 (종합건설업자가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는 해당없음 표기)		
7-1) 하도급자			
7-2)하도급계약일			
7-3)하도급준공일			
7-4) 하도급공사 규모 및 내용			
7-5) 하도급금액 (준공+관급)			

Ⅲ. 붙임
<p>1) 계약서 및 공동수급협정서 사본 각 1부. (공동도급으로 시공한 실적일 경우에 한함) 위와 같이 공사(총공사) 준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귀하 주 소: 회 사 명: 대 표: 위 내용을 증명함</p>
(발급기관명)

- 주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및 입찰설명서(공고) 요구내용의 기재란이 없는 경우는 별지 작성 가능함.
- 주2) 당해공사 시공실적심사에 필요한 내용의 미기재, 불분명 등의 경우는 인정 가능한 범위내에서 인정하고 이외의 부분은 불인정함.(보완제출 불허)
- 주3) 시공실적의 심사는 우리공사 “시공실적제출 및 심사기준”에 따라 처리함.
- 주4) 본 실적증명서의 불임이 없는 경우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
- 주5) 본 기재란에 대한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없음”으로 표기하여야 함.
- 주6) 시공실적증명서 및 첨부물마다 간인(서명)을 하여야 함.
- 주7) 동일구조물 공사를 연차적으로 발주 및 시공한 경우는 최근 10년 이내에 준공한 공사의 최초부터 최종공사의 단일용도의 단위구조물(체) 각각의 규모 및 금액을 기재하되, 차수별 공사내용(공사명, 공사규모, 공사금액, 준공일등 실적심사에 필요한 사항) 및 채색구분된 도면(평면도, 종.횡단면도)을 첨부하시기 바라며, 그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되어 실적심사가 곤란한 경우는 불인정함.
- 주8) 공동도급으로 시공한 실적의 경우는 계약서 및 공동수급협정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함.
- 주9) 제7)항 하도급내용 중 97년 7월 10일 이전에 철강재 제작, 설치공사를 철강재설치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반드시 계약일, 준공일 포함하여 기재하여야 함.(원도급 준공일이 '97.7.10 이전인 경우 계약일, 준공일 부기 생략 가능)

하도급계획 공사비산출서

공사명 :

하도급 공사명 :

구 분	설계금액		입찰금액		하도급 금액
	산출방법	금액	산출방법	금액	금액
1. 재료비					
2. 노무비					
2-가. 직접노무비					
2-나. 간접노무비	[2가]의 %				
3. 경비					
3-가. 산출경비					
3-나. 산재보험료	[2]의 %				
3-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a, b중 작은값				
a.	[1+2가+지급자재 (부가세별도)]의 %				
b.	[1+2가]의 %×1.2				
3-라. 고용보험료	[2]의 %				
3-마. 퇴직공제부금비	[2가]의 %				
3-바. 건강보험료	[2가]의 %				
3-사. 연금보험료	[2가]의 %				
3-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3바]의 %				
3-자. 건설기계대여대금지 급보증서발급금액	[1+2가+3가]의 %				
3-차. 환경보전비	[1+2가+3가]의 %				
3-카. 공사이행보증수수료					
3-타. 건설하도급대금지급 보증발급수수료	[1+2가+3가]의 %				
3-파. 기타경비	[1+2]의 %				
4. 일반관리비	[1+2+3]의 %				
5. 이윤	[2+3+4]의 %				
6. 건설공사손해보험료					
7. 간접피해보상비	[1+2+3+4]의 %				
8. PS항목					
9. 소계	1~8의 합				
10. 부가가치세	[9]의 %				
총계	9+10	①		②	③

※ 유의사항

1. 하도급계획 공사비 산출서에서 ①설계금액, ②입찰금액, ③하도급 금액은 해당 하도급공사의 [별지 제 5호]에서 설계금액(A), 입찰금액(B), 하도급 금액(C)과 각각 같아야 한다.

물 량 산 출 요 령

1. 입찰자는 우리공사에서 물량내역작성을 허용한 공종에 한하여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입찰자의 물량내역작성은 물량산출사유로 인정하지 않는다.
3.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한국도로공사)」과 우리공사에서 정한 수량산출기준에 따라 물량을 산출한다.
4. 물량내역서를 작성하는 세부공종의 물량산출은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면(이하 '설계도서'라 한다)에 의한 정미량을 원칙으로 한다, 단, 우리공사에서 물량내역서의 물량을 소요량으로 적용한 경우에는 소요량으로 한다.
 - 가. 정미량(절대소요량) : 공사 목적물에 투입되는 자재량을 말하며, 도면물량이라고도 한다. 또한, 도면물량에는 공제하지 않은 수량(체적과 면적·길이 등)을 포함한다.
 - 나. 소요량 : 정미량 + 할증량(시공손실량)
 - ※ 소요량이란 시방 및 도면에 의하여 산출된 재료의 정미량에 운반, 절단, 가공 등 시공 중에 발생하는 손실량을 더한 양
5. 설계서의 정미량을 산출할 수 없는 물량내역서의 물량은 우리공사에서 정한 수량산출기준에 따라 산출하여야 한다.(예, 숏크리트 리바운드량, 인력공수, 할증비율(%), 부속 자재량, 여굴량, 공제하지 않는 대상 등)
6. 토공 유동량(성토량, 사토량, 반입토량 등)의 산출방법 및 기준은 우리공사에서 정한 수량산출기준에 따라야 한다.
7. 최종확인물량 및 입찰자의 물량작성은 물량산출근거의 물량산정방법(물량의 단위 및 소수점처리)에 따라 단계별 물량 산정 및 최종물량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우리공사가 물량산출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물량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입찰자가 제시한 적정한 소수점처리기준을 인정하며, 이에 따른 물량산출 오차는 오차로 보지 아니한다.
8. 우리공사에서 제시한 수량산출기준의 불분명, 누락, 오류, 상호모순 등으로 인해 해석이 불분명한 경우 물량내역작성 전 우리공사에 서면 질의를 통하여 확인 후 작성하며, 우리공사의 결정 및 해석에 따른다.
9. 물량내역서 상이한 세부공종의 물량내역이 설계서와 일치하지 않으나 목적, 기능, 위치 등을 고려할 때 설계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에는 해당 세부공종을 삭제하지 않고 물량내역을 작성하여야 한다.
10. 물량산출기준 간에 상충되거나 불명확한 기준은 반드시 우리공사에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11. 측정하는 도구에 따른 기계오차, 기술자의 숙련도에 따른 개인오차 등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입찰자의 주관적 물량산출사유는 인정하지 않는다.
12. 입찰자의 산출내역서 물량은 우리공사에서 교부한 물량내역서의 소수점자리수 및 지위(止位)와 동일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별지 제7호 서식]

시 공 계 획 서

항 목	내 용	비 고
1. 공사개요	· 설계 공사내용, 현장여건 등	
2. 공사관리조직	· 공사수행 조직구성	
3. 공정계획	· 해당공종의 공정추진계획	
4. 자재관리계획	· 자재구매(반입) 및 주요자재 관리계획 등	
5.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	· 효율성 높은 장비 대체, 장비투입에 의한 노무비 절감계획 등 포함	
6. 시공관리계획	·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단계별 시공관리 계획 등	
7. 품질관리계획	· 하자발생 방지를 위한 적정 품질관리 계획 등	
8. 안전관리계획	· 안전관리(안전관리 조직 운영계획 포함)·점검계획, 중점 안전관리사항, 안전사고 발생방지 계획 등	
9. 환경관리계획	· 환경요인별 영향검토 및 관리방법 등	

[별지 제8호 서식]

공동수급체 현황표

가. 대상공사

공 고 번 호		입 찰 일 시	
공 사 명			

나. 공동수급체 구성현황

구 분	구성원 (대표자)	구성원 (2)	구성원 (3)
①회 사 명			
②대 표 자	(인)	(인)	(인)
③지역업체 여부	해당없음, ○, ×	해당없음, ○, ×	해당없음, ○, ×
④중소기업 여부	해당없음, ○, ×	해당없음, ○, ×	해당없음, ○, ×
⑤이 행 내 용(분담분야,참여비율)			
⑥이 행 방 법			
⑦사업자등록번호			
⑧시공능력평가액			
⑨토.건도급순위			
⑩보유면허 및 번호			
⑪동일공사 실 적	규모		
	금액	천원	천원
⑫유사공사 실 적	규모		
	금액	천원	천원
⑬ 5년간 실적	천원	천원	천원
⑭기술자보유 내 용	일반	명	명
	지원	명	명
	경력	명	명
⑮경영상태 평가	등급평가일 / 유효기간		
	종류구분(회사채,기업어음, 기업신용)		
	등급현황		
	신용정보기관명		
⑯시공여유율			
⑰최근 입찰공고일기준 3개월이내 합병,분 할,사업양수도 여부			
⑱신인도 내용			
⑲전 화 번 호			
⑳주 소			
작 성 자			

주1) 공동도급의 이행내용 및 이행방법은 구성원중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등 불가
피한 사유가 없는 한 변경할 수 없음.

주2) 단독입찰인 경우에는 지역업체 여부, 중소기업 여부에 해당없음으로 표시.

[별지 제9호 서식]

건설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동일공사 시공인력)

근무처		입사일	년 월 일	동일공사분류				
성명		생년월일 (여권번호)		직위				
직무분야		직무분야 등급	동일공사 현장경력 참여일 합계	동일공사 현장대리인경력 참여일 합계				
			일	일				
○ 동일공사 참여 실적								
발주자	공사명	동일공사 실적				참여기술자		
		해당공종	공사규모	공법 (구조, 형식)	해당 공종금액 (지분율)	참여기간	참여일수	담당업무
위와 같이 우리회사 소속 직원의 발급기준일(입찰공고일)현재 기술자 경력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 . . .		
※ 발급기준일(입찰공고일) : 20 . . .						주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발급기관명)						위 사실을 확인함.		

주)

- 1) 시공인력평가 대상 기술자는 직무분야 등급이 초급이상 기술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에서 정한 동일공사분류 현장에 3년이상 (자격취득 전후 포함) 종사한 기술자의 경우에 해당됨.
- 2) 동일공사 실적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음.
- 3) 해당공종금액은 도급자설치 관급금액 포함 및 천원단위 기재
- 4) 직무분야 등급란에는 건설기술진흥법의 기술자 등급 기재.
- 5) 참여기술자의 기술경력중 공사규모, 공법은 필히 동일공사의 실적에 포함되어 있어야 함.
- 6) 담당업무란에는 현장대리인 근무경력을 구분하여 표시

[별지 제10호 서식]

배치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책임자 범위	
--------	--

근무처					입사일	년 월 일			
성명			생년월일 (여권번호)				직위		
직무분야	직무분야 등급		국가기술자 종목 및 등급			현 근무처 근무일수			
						일			
○ 참여 실적									
발주자	공사명	공사 실적					참여기술자		
		총공사금액	해당공종	공사규모	공법	공종금액	참여기간	참여일수	담당업무
○ 현장대리인 경력 참여일 합계						일			
○ 현장 기타직위 경력 참여일 합계						일			
○ 분야별 책임자 경력 참여일 합계						일			
위와 같이 우리회사 소속 직원의 발급기준일(입찰공고일)현재 기술자 경력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발급기준일(입찰공고일) : 20						주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발급기관명)						위 사실을 확인함.			

주)

- 1) 공사실적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음.
- 2) 총공사금액은 도급자설치 관급금액 포함 및 천원단위 기재(지분율 미반영한 금액 기재)
- 3) 직무분야 등급란에는 건설기술진흥법의 기술자 등급 기재
- 4) 참여기술자의 기술경력중 공사종류, 공법은 필히 동일공종그룹 공사의 실적에 포함되어 있어야 함.
- 5) 책임자 범위는 발주기관에서 정하는 분야의 책임자 내용을 기재(현장대리인, 시공책임자,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 등)
- 6) 고속도로 현장대리인 경력 참여일 합계, 고속도로 현장 기타 직위 경력 참여일 합계는 배치예정 책임자 범위가 현장대리인인 경우 작성
- 7) 분야별 책임자 경력 참여일 합계는 현장대리인 외 배치예정 책임기술자에 대한 참여일 합계 기재. 시공분야 책임자의 경우 동일공종그룹공사의 시공관련 경력 참여일 합계를, 품질 및 안전분야 책임자의 경우에는 동일업종 공사의 품질 또는 안전관련 경력 참여일 합계를 기재
- 8) 국가기술자 종목 및 등급란에는 국가기술자격법상의 종목 및 등급 기재